

연구보고 RR 2009-4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인용기준에 관한 연구

연구책임자 : 윤태영(아주대학교)

연구조원 : 문주영(아주대학교)
한성준(아주대학교)

과제책임자 : 김종현(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본 연구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인용기준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비로 수행한 것으로써,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의 개인 견해를 밝혀드립니다.

본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가나다순)

문무상(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박형용(한국교육학술정보원)

신종필(문화체육관광부)

안경화(교육과학기술부)

염기성(교육과학기술부)

유재택(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정재곤(한국저작권위원회)

조순영(한국교육학술정보원)

제 출 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인용기준에 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9년 9월

주관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연구책임자 : 윤태영

머 리 말

급변하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교육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들의 콘텐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정보의 유통과 교육콘텐츠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절실히 되는 상황에서 교육콘텐츠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그 비중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특히 수업 등의 목적을 위해 제작되는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자료 저작물의 활용성에 있어서 저작권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 만들어지는 수업자료 등의 저작물들을 외부에 공개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그 목적이다. 따라서 제외국의 인용기준 및 인용이 문제되었던 판례 등을 연구하여 우리 교육현장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용기준을 마련하고,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기준에 따라 문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미술, 디지털 영상 등 무형적 이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인용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교수·학습자료를 활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외의 인용 해석론을 바탕으로 아직 교육자원공개(OER)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미약한 우리나라에서 저작물 이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OER 활용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이는 향후 저작물의 인용과 관련하여 교육콘텐츠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본 연구를 위해 아낌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구진의 노고와 검토의견을 주신 관련 전문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09년 9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 장 

요 약

오늘날 사회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이러닝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들도 이러닝을 교육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물론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러나 만약 교육기관이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교수자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해석상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업목적상 작성된 복제물이라도 수업 종료 후 그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공중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 조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제28조이다. 즉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더라도 그 강의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인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목적이 아니면 전혀 다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Fair Use'와 관련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독일과 일본에서도 인용 관련 연구와 판례가 있어 왔다. 또한 강의자료를 공개하는 경우에도 인용을 중요한 저작권 제한사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제외국의 인용기준 및 인용이 문제되었던 판례 등을 연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용기준을 마련하는데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차 례

요 약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3.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3
II. OER 활성화와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분석	5
1. OER과 저작권의 관계	5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5
나. 대학 강의자료 공유와 자유이용의 한계	6
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규정의 해석	8
2. 이러닝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례와 저작권 문제	9
가. 어문저작물의 인용	9
나. 미술저작물의 인용	9
다. 음악저작물의 인용	10
라. 동영상의 인용	10
마. 사진저작물의 인용	11
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인용	11
사. 출처표시	12
III. 저작권법상의 인용 규정의 해석	13
1.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13
가. 공표된 저작물	13
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14
다. 정당한 범위 내일 것	15

라.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과 합치될 것	17
2. 법원의 구체적 판단	18
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본 사례	19
나.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5
3. 정리	33
IV. 해외의 인용 해석론	36
1. 미국	36
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36
나.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37
2. 독일	43
가. 개정 전의 상황과 제51조의 개정	43
나. 공정 인용 판단의 요소	44
3. 일본	48
가. 저작권법 제32조의 규정 체계	48
나. 전통적인 인용 기준	49
다. 새로운 경향	53
4. 인용 가이드라인의 예	55
가. 미국의 ‘교실 가이드라인’	55
나. 일본 교토대학의 ‘OCW 가이드라인’	58
다. MIT Press 출판물 인용 가이드라인	59
라. Wikipedia 인용 가이드라인	63
5. 해외 저작권 동향으로부터의 시사	73
가. 외국 저작권법과의 비교 요약	73
V. OER 활용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안)	76
1. 저작물 인용요건	76
2. 인용시 유의사항	77

3.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	77
VI. 결론	78
참고문헌	80
Abstract	84
[부록 1] OER 활용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안)	85
[부록 2] 저작권법	94

I.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복제,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그러나 만약 교육기관이 수업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거나, 다른 교수자들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의 해석상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수업목적상 작성된 복제물이라도 수업 종료 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배포하거나 공중에게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대학의 경우 많은 교수들은 자신의 강의자료를 외부에 공개하기를 꺼려하게 되고, 아울러 최근 교육현장에서 추진되고 있는 우수강의 콘텐츠 공유사업도 저작권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저작권법 조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제28조이다. 즉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더라도 그 강의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게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용’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동안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업목적이 아니면 전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다는 두려움마저 있고, 심지어 저작권 전문가조차도 인용을 단순히 문헌에서의 출처표시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교육현장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교재의 복제와 같은 유형적 이용보다도 오히려 음악이나 미술, 디지털 영상 등 무형적 이용이 많

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용은 문헌에 대한 이용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 제외국의 인용기준 및 인용이 문제되었던 판례 등을 연구하여, 우리 교육현장에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인용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시사점을 주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범위와 방법을 통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인용과 관련한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본고에서는 저작권법상의 저작권 제한사유¹⁾의 하나로써의 '인용'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특히 제25조의 범위 밖에 있는 저작권 이용행위가 인용과 관련한 제28조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둘째 국내 이론과 판례를 분석함과 더불어, 아직 우리나라의 판례와 이론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를 함께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법제를 비교 검토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미국은 최근 세계 저작권을 주도하고 있고, 독일과 일본은 우리와 유사한 법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인용에

1)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를 향상 발전시킬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여 저작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일정한 경우 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여 저작물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의 이익도 도모하고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의 복제(제23조), (2)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의 이용(제24조), (3)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제작 및 수업목적상 필요한 저작물 일부분의 이용(제25조), (4) 방송·신문 등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제26조), (5) 신문 및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에 대한 다른 언론기관의 이용(제27조), (6)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제28조), (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제29조), (8)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의 이용(제30조), (9)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한 복제(제31조), (10) 학교의 입학시험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제32조), (11)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점자로의 복제·배포(제33조), (12)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제34조), (13) 미술저작물 등의 일정한 전시 또는 복제(제35조), (14) 자유이용이 허락되는 경우에 있어서의 번역 등에 의한 이용(제36조).

대한 이론을 발전시키고 축적시켜 온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와 이론을 고찰함으로써 인용기준을 수립하는 데에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을 기초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려 한다.

먼저 제2장(Ⅱ)에서는 국내 OER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저작물 인용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저작권법의 적용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3장(Ⅲ)에서는 저작권법 제28조의 해석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이론과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교육기관의 강의콘텐츠 외부활용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다른 판례는 없으나, 인용과 관련한 몇 차례의 사례가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우리 판례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분쟁시 예측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이다. 제4장(Ⅳ)에서는 해외의 인용해석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과 독일, 일본의 인용규정 해석론을 살펴보고 해외 가이드라인을 참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용 규정 해석과 관련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하여 인용 가이드라인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도출해내고자 한다. 끝으로 제5장(Ⅴ)에서는 인용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종합하고 이러한 논의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하고자 한다. 아울러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부록에 상세히 제시함으로써 실제 강의 공개에 있어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의 기대 효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는 교육현장에서의 인용기준을 연구하는 것으로, 저작물의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업자료를 저작권법상의 수업 목적 이외에 활용하는 경우, 예컨대 OER 등에 있어서 크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은 물론 초·중등교육기관에도 본 연구가 적용됨은 물론이고, 평생교육원이나 국가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KOCW 등에 모두 적용 가능하다. 특

히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을 넘어서서 그 이외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경우 본 연구는 중요한 지침서가 될 수 있다. 아울러 향후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 관련 인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1조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저작물이라는 것은 보호하여야 하지만 아울러 공정한 이용을 통해서야 비로소 빛이 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는 본 연구를 통해 바른 저작권 이용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

II. OER 활성화와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분석

1. OER과 저작권의 관계

가.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오늘날 사회 네트워크화의 진전에 따라 교육 분야에서도 네트워크 기술을 적극 활용한 이러닝 등 새로운 교육시스템이 각광받고 있다. 최근 대학을 비롯한 많은 교육기관들도 이러닝을 교육전달에 있어서 가장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러닝이 전통적인 교실에서의 대면수업을 성공적으로 대체할 것인지 그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으나,²⁾ 적어도 이러닝이 전통적인 교육 보급에 혁신적인 보완 수단으로써 효과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에서는 많은 이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이러닝은 학습자가 좋아하는 시간에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여야만 하는 강의교재를 쉽게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이러한 수업에서 저작권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2007년 저작권법에서 수용된 바 있다. 즉 우리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2) Cleborne D. Maddux, Developing Online Courses: Ten Myths, 23 RURAL SPECIAL EDUC. Q. 27, 27(2004); Simon Marginson, Don't Leave Me Hanging on the Anglophone: The Potential for Online Distance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58 HIGHER EDUC. Q. 74, 75(2004).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하여서는 여기에서 규정하는 ‘전송’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래 공연이나 방송에 비하여 전송은 인터넷을 통하므로 전달의 효력이 크고 그만큼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2007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한편 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을 받는 자 역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5조 제3항). 오늘날 수업형태가 일방적 주입식이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 정보수집에서 결과에까지 이르게 하는 방식이 각광받고 있으므로 학습자가 수업과정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복제·전송을 하는 것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저작권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대학 강의자료 공유와 자유이용의 한계

최근 예일, 버클리 등 미국 유수의 대학은 물론 독일, 일본 등 많은 전세계 대학들이 지식 공유 차원에서 강의자료를 웹상에서 무상 공개하는 OER(Open Educational Resources)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대학이 이를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강의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수업목적에 해당되어(저작권 제한 사유),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교육기관이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공연·방송·전송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디까지나 ‘그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수업목적은 좁게 해석하면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수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으로 한정되는데 반하여, 넓게 해석하면 널리 수업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과정에서의 이용행위까지 포함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저작권법이 전송까지 허용하고 있고 특별히 ‘수업목적’이라는 제한을 두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수업목적의 범위를 지나치

게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³⁾ 따라서 수업목적상 작성된 복제물이
라도 수업종료 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배포하거나 공중에게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로 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같은 취지
에서 강의자료를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것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말하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만약 어떤 교수자가 수업목적상 필요하여 TV프로그램 일부를
녹화하거나 인터넷상의 동영상이나 자료의 일부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다운
로드하여 이것을 수업에 이용하는 경우에 제25조의 요건을 갖추면 저작권
침해로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 수업 동영상을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에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만약 타인의 저작
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당초
좋은 목적에서 시작한 강의자료 공개로 인하여 오히려 저작권 분쟁에 휘말
릴 수 있고, 이 점을 경계하여 교수자는 자신의 강의자료를 공유하기를 꺼
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저작물 이용행위
가 저작권 침해로 된다면 OER 자체가 처음부터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이것
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서 중요한 조문 중의 하나가 바로 제28
조이다. 즉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어떤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게 되
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자료를 외부에 공
개하더라도 그 강의에 사용된 내용이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말하는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게 된다. 이 규정은 본래 교육을 염
두에 둔 규정은 아니나, 저작권 제한 규정 중에서 가장 일반조항으로써 기
능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IT활용교육, 나아가 OER에 있어서
도 이 규정이 적용되면 저작물 등의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3)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07, 568면.

다. 저작권법 제28조 인용규정의 해석

인용이란 자신의 의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공익과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자유이용이 허락된 것이다.⁴⁾ 여기서 인용이란 타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을 그 표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것으로써, 인용을 하면서 수정이나 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용되는 저작물의 기본적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그 표현의 본질적 특성을 알 수 있다면 역시 인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반면에 타인의 저작물을 기초로 거기에 나타난 사상과 감정을 소화하여 자신의 표현으로 나타내었다면 이는 인용이 아니라 독자적인 저작이 된다.

인용되는 저작물은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영화·라디오·TV프로그램 등 다른 저작물 형태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⁵⁾ 또한 제28조 규정에서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한적이 아니라 예시적 규정으로써 그 밖의 목적을 위해서도 다른 저작물의 인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다른 저작물을 인용한 강의자료를 OER로써 외부에 무상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제28조의 요건에 부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되지는 않는다. 다만 제28조에 의하여 타인의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인용은 특히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법이 특별히 그 허용요건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요건은 매우 추상적인데다 사안마다 구체적 적용이 다를 수 있고, 인용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것이 적법한 인용인지에 대하여 확고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⁶⁾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

4) 오승중, 전게서, 591면.

5) 하용득, 「저작권법」, 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1988, 184면; 오승중, 전게서, 591면

6) 인용에 관한 의식을 조사한 문헌으로는, 문화관광부, 「인용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2005. 12. 참조.

2. 이러닝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례와 저작권 문제

가. 어문저작물의 인용

보통 강의자료에서 다른 사람의 어문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사람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출처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타인의 어문저작물을 인용하면서 그 저작권자에게 인용에 대한 허락 여부를 묻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인용시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하여 타인 저작물의 일부만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한 강의를 하면서 타인의 이론을 비평하거나 소개하기 위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적법한 인용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약 타인의 문헌을 거의 대부분 인용하거나 타인의 문헌 중 핵심적인 부분을 요약 정리하여 강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의 파워포인트 자료를 만드는 경우 출처표시를 생략하거나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요약하기 쉬우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외국문헌을 번역 요약하여 인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에도 저작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나. 미술저작물의 인용

이러닝 콘텐츠에서 다른 사람의 미술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유명한 미술가의 사상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의 작품을 보여주는 방식이 있다. 보통 미술사나 미술 사상과 관련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미술작품이 없으면 수업 자체가 구성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미술작품은 일부만을 인용한다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보통 인용한다고 하면 전체를 인용하는 것으로 된다.

한편 미술저작물을 초기 화면은 물론 배경화면 등으로 인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업목적과도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다. 음악저작물의 인용

음악저작물에 있어서도 위에서 언급한 미술저작물과 같이 어떤 음악가의 사상 등을 설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보다는 주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강의내용과는 직접 관련 없이 초기화면이나 강의 중간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떤 음악 중 가장 대표적인 부분을 발췌하여 강의에 이용하는 사례가 두드러지는데(일부인용), 이 경우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에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으나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라. 동영상의 인용

최근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에 따라 타인의 동영상을 자신의 강의 콘텐츠에 인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 수 있다. 예컨대 뉴스의 일부영상이나 다큐멘터리의 실험장면 등을 자신의 강의콘텐츠 등에서 보여주면서 자신의 논리를 설명하거나 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모든 실험을 직접 하면서 이론을 설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용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이러한 영상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학습효과에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어떤 영화나 상업용 영상을 언어나 이론을 설명하면서 강의화면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영어 회화 수업에서 영화의 일부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방법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업용 저작물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위의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한 저작물의 인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동영상은 강의의 초기화면 등에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인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될 수 있음은 위의 다른 유형의 저작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마. 사진저작물의 인용

다른 사람의 사진저작물을 자신의 강의 콘텐츠에 인용하는 예는 앞의 미술저작물의 인용례와 유사한 점이 많다. 동영상 캡처한 화면도 마찬가지로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하겠다. 다만 어떤 사진저작물을 가지고 패러디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다른 저작권 침해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이것이 유명한 연예인의 사진인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아울러 인물사진과 관련하여서는 프라이버시 등 인격권 침해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한편 패러디는 원래 원작의 약점이나 진지함을 목표로 삼아 이를 흉내내거나 과장하여 왜곡시켜 비평이나 웃음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 패러디에 대해서는 이것이 2차적 저작물이나 하는 문제와,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바.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의 인용

최근 많은 비용을 들여 공들여 만든 강의 콘텐츠에는 애니메이션이나 캐릭터를 활용한 강의 콘텐츠가 많다.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은 어문저작물의 요소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시각적 저작물의 요소도 가지므로 저작권 침해판단에 있어서도 양 요소를 혼합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강의가 효과적인 것은 사실이나 강의 내용을 전달하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만약 다른 사람의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을 무단으로 인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사. 출처표시

논문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보통 출처표시를 신중하게 하는데 반하여, 강의자료를 만드는 경우에는 있어서는 출처표시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아무리 적법한 인용에 해당할지라도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Ⅲ. 저작권법상의 인용 규정의 해석

1. 인용이 되기 위한 요건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면, 타인 저작물의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① 공표된 저작물일 것,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③ 정당한 범위 내일 것, ④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공표된 저작물

먼저 첫 번째 요건으로서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하므로, 만약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을 인용할 경우에는 본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은 물론 그 인용으로 인하여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을 침해하게 된다. 공표된 저작물이면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인터넷 동영상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우선 인용의 대상으로 된다. 우리 법원도 하급심 판례이긴 하나 토플문제를 외부에 유출한 사건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즉 미국에 저작권 등록된 토플(TOEFL) 시험문제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토플시험을 관리·감독하는 교수가 잡지와 단행본 등에 복제하여 사용한 사안인데, 법원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위 책자의 제작·판매·반포행위를 금지하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무단복제한 시험문제 1문항당 10달러씩을 배상하도록 한 바 있다.⁷⁾

“피고는,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데 이 사건 토플 시험과 같이 해당 문제로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시험을 치르는 그 자체가 해당 시험문제의 공표에

7)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해당되며, 피고는 공표된 위 문제들을 교육 목적으로 해설 기사를 덧붙여 위 잡지에 인용하였을 뿐이므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방송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고는 토플시험 응시생들에게 문제지의 소지, 유출을 허용하지 아니하고서 그대로 회수함으로써 시험문제들이 공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고, 시험이 시행된 후에 원고 자체의 판단에 따라 재사용여부나 공개여부, 공개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증거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 제한된 범위의 응시생들이 토플 시험을 치르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공표라 할 수 없고, 달리 원고의 토플 문제가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었다거나 발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고 이유 없다.”

나.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

두 번째 요건으로서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인용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것을 요한다. 본조에서 말하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이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따라서 OER로써 무료로 강의를 배포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학문이나 예술,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저작물을 잘 꾸며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 위한 목적이거나 자신의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한 목적 등으로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상업적인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법원도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다. 예컨대, SBS방송사가 방영하는 ‘신동엽의 있다! 없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스타의 숨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코너인 ‘스타 UCC’ 편에 연기자 이순재가 ‘대괴수 용가리’라는 영화에 출연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이 영화 중 일부 장면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3분 정도 방영한 사건에서,⁸⁾ 법원은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영화를 일부인용하여 방영한 것은 저작권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 이라고 일컫는다) 제28조에 정해진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항변을 한다. 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서 이 사건 영화를 일부인용한 것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피고 에스비에스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유료로 이 사건 프로그램을 방송한 점,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영화의 인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였던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의 위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범위 내일 것

정당성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필연성’이 있어야 하고, 인용한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된 저작물이 종이가 되는 이른바 ‘주종관

8) 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계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필요 최소한도의 인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정당성은 저작의 목적상 자기의 저작물에 인용을 필요로 하고, 그것이 객관적으로도 정당시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당한 범위 내인가 아닌가 여부는 앞서 본 바대로 결국 사실문제로서 각 경우마다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라는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는 것은 '주종관계(主從關係)'이다. 즉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을 비교할 때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이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주종관계'가 있어야 정당한 인용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종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각 저작물의 분량, 즉 양적 측면을 참작함과 함께 질적 측면도 고려하여야만 한다.

먼저 양적인 측면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피인용저작물의 전부인용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법에서 '정당한 범위 내'라고만 하고 일부만 인용한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당한 범위 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전부인용이 어떤 경우에도 불가능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시 등의 짧은 어문저작물, 사진저작물, 미술저작물 중 회화 등의 경우에 개별 저작물별로 판단할 때 '전부인용'이 되지 않으면 인용의 목적을 도저히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인용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정당한 인용이 될 수 있다.⁹⁾ 예컨대 문학평론가가 어느 시인에 대한 평론을 쓰면서 비평대상인 몇 편의 시를 전부인용하는 경우나 미술사에 관한 저술에서 어느 화가의 회화 작품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 등이 그러하다.¹⁰⁾ 왜냐하면 시의 한 소절 또는 가사의 한 소절만 인용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인지 가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사진의 경우 한 부분만을 인용한다면 이는 오히려 그 저작물을 훼손하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9)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374면;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57집, 법원행정처, 1992, 366면;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해설」, 명문프리컴, 2007, 216면 등.

10) 이해완, 전거서, 374면.

주종관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의 양적 측면보다도 질적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 인용되는 저작물의 부분보다 인용하는 저작물의 분량이 훨씬 많더라도 질적인 측면에서 인용되는 부분이 월등히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된다고 하려면 먼저 인용부분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저작물로서의 독자적인 의의를 가지는 창작부분이 존재하여야 한다. 나아가 원칙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이 그 인용된 부분만으로는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인용저작물과 연관이 될 때에 비로소 그 존재이유를 갖게 되는 것이어야 한다.¹¹⁾ 예컨대 타인이 저술한 논문을 자기의 저서 중에 그대로 전재하는 행위는 공정한 인용으로 자유이용 또는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전재행위는 자기의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기 위하여 또는 자기 저작물의 시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피인용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일 뿐 피인용저작물과 인용저작물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없기 때문이다.¹²⁾

라.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과 합치될 것

공정관행합치성과 관련하여서도 결국 궁극적 판단은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의거함을 전제로 하나, 보통 다음 두 가지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먼저 인용의 목적과 관련하여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컨대 보도의 재료로써 저작물을 가져다 쓰는 것, 타인의 학설이나 견해를 논평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인용하여 비평하는 것, 자기의 논문 중에 타인의 논문 일부를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보강하는 논거로 하는 것, 소설을 저술하면서 그 배경이 되는 시대상황을 설명하거나 묘사하기

11) 이해완, 전계서, 373면.

12) 이형하, 전계논문, 366면 참조.

위하여 필요한 작품으로써 타인의 시가의 한 문구 또는 한 구절을 삽입하는 것, 미술작품에 관한 평론을 저술하면서 타인의 회화를 인용하는 것 등은 저작물의 성질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한다.¹³⁾ 그러나 인용이란 이름으로 인용저작물에 수록될 필연성이 없는 경우, 예컨대 그림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비평이 아닌 감상인 경우와 같이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인용이 아니라고 본다.¹⁴⁾

한편, 인용하는 방법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고 한다. 예컨대 어문저작물의 경우에 인용문을 괄호로 표시하는 등 자신의 문장과 구별하여야 하며, 피인용저작물이 인용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연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이를 ‘명료구별성’ 또는 ‘명료구분성’이라고도 한다. 이 경우 어느 저작물로부터 인용한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그 출처를 명시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¹⁵⁾

이상 우리 저작권법 제28조에 나타난 요건의 해석론을 살펴보았다. 다만 이러한 기준들에 의하더라도, ③ 정당한 범위 내일 것, ④ 그 목적과 방법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될 것이라는 요건은 여전히 추상적이어서 결국은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법원의 판단에 최종적으로 맡겨져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개개 사건에서 나타난 판례의 입장을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법원의 구체적 판단

우리나라에서는 인용이 문제되었던 사건들이 많지는 않다. 아울러 교육기관의 수업에 있어서는 본래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저작권이 제한되므로 교육기관에서의 인용과 관련하여 문제가 된 판결은 보이지 않는다. 다

13) 하용득, 전계서, 186면.

14) 허희성, 전계서, 216면.

15) 이해완, 전계서, 375면.

만 최근 저작권 위반이 문제된 사건들에서는 인용에 관한 제28조를 근거로 저작권 침해 여부가 다투어진 바 있다.

우리 법원의 입장은 대체적으로,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¹⁶⁾ 그럼 각각의 사례에서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으로 본 사례

1) ‘썸네일 이미지’ 사건

최근 검색서비스의 한 형태로써 인터넷상에 공개된 이미지 자료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서 타인의 저작물인 이미지를 이른바 ‘썸네일 이미지’로 축소하여 게재하고 원래의 이미지가 있는 사이트로 링크를 걸어 둔 것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가 다투어진 사건이 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정당한 범위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 판단하였다.¹⁷⁾

“검색사이트에 썸네일 이미지의 형태로 게시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들은 공소외인의 개인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표된 것인 점, 피고인 회사가 썸네일 이미지를 제공한 주요한 목적은 보다 나은 검색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검색어와 관련된 이미지를 축소된 형태로 목록화하여 검색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미지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는 것이지 피고인들이 공소외인의 사진을 예술작품으로서 전시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하여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한 것이 아닌 만큼 그 상업적인 성격은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것에 불과한 점,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은 심미적이고 예술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

16)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고 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회사의 사이트에 이미지화된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의 크기는 원본에 비해 훨씬 작은 가로 3cm, 세로 2.5cm 정도이고, 이를 클릭하는 경우 독립된 창으로 뜬다고 하더라도 가로 4cm, 세로 3cm 정도로 확대될 뿐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보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원본 사진과 같은 크기로 확대한 후 보정작업을 거친다 하더라도 열화현상으로 작품으로서의 사진을 감상하기는 어려운 만큼 피고인 회사 등이 저작물인 공소외인의 사진을 그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회사의 검색사이트의 이 사건 썸네일 이미지에 기재된 주소를 통하여 갑의 홈페이지를 거쳐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순차 링크됨으로써 이용자들을 결국 공소외인의 홈페이지로 끌어들이게 되는 만큼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사진을 이미지검색에 제공하기 위하여 압축된 크기의 이미지로 게시한 것이 공소외인의 작품사진에 대한 수요를 대체한다거나 공소외인의 사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미지 검색을 이용하는 사용자들도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사진으로 감상하기보다는 이미지와 관련된 사이트를 찾아가는 통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은 점 및 썸네일 이미지의 사용은 검색사이트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보다 완결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측면이 강한 점 등 판시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회사가 공소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공소외인의 사진작품을 이미지검색의 이미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영화 ‘러브레터’ 사건

일본 영화 ‘러브레터’의 주요장면 중 일부를 ‘해피 에로 크리스마스’에 무단으로 삽입하여 상영하고, 이를 비디오와 DVD로 제작·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침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이 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¹⁸⁾

17)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자 2004카합344 결정

“위와 같은 인용 부분의 표현 형식상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은 명료하게 구분되어 그것들이 별개의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인용영화는 국내에서만 110여 만 명의 상영관 관객을 동원하는 등 상업적 흥행에 성공하여 인용영화의 잠재적 관객 중 피인용영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용부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소수일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인용부분은 수정이나 개작을 거치지 아니한 원작 그대로로서 원작에 대한 훼손이 전혀 없어 피신청인들이 인용영화에서 인용부분이 신청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따로 밝히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누구라도 신청인의 저작물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인용부분은 110여 분에 달하는 인용영화의 총 상영시간 중 불과 30초 가량으로서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인용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 장면으로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이른바 공중의 영역에 근접해 있다고 보여지는 점, 인용부분은 단지 인용영화의 등장인물 중 1인의 성격을 그럴듯하게 묘사하기 위한 필요에서 원작의 동일성을 전혀 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어떤 의미전달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삽입으로 인하여 인용영화의 실질적 가치가 높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인용영화와 인용영화는 장르나 예술적인 완성도에 있어 차이가 있고, 더욱이 피인용영화는 개봉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인용영화로 인하여 피인용영화의 현재 또는 잠재적인 시장에서의 가치가 감소된다거나 인용영화가 피인용영화의 수요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고, 인용부분은 피인용영화를 떠올리게 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질 뿐으로 그 부분만으로는 피인용영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도 없어 그 부분 때문에 인용영화의 관객이나 비디오 등의 구매 고객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인용 부분의 이용허락을 수차례 요청하였던 점 등 기록상 소명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청중의 입장에서 인용 부분의 삽입으로 인하여 인용영화가 피인용영화를 부당하게 이용하였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그와 같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

신청인은 전기적 소설인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편저자이며, 피신청인은 망 이휘소를 모델로 한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의 저자로서, 신청인

은 피신청인의 소설이 자신의 소설을 복제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도서의 제작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핵물리학자 이휘소’의 핵심 내용인 60여 면 상당 부분을 무단으로 전재하고 신청인이 창작한 허구적 스토리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등 ‘핵물리학자 이휘소’를 표절하여 이 사건 소설을 저술하였고, 피신청인 출판사는 이를 출판함으로써 신청인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및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으로 판단하였는데 판결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⁹⁾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서 정한 인용의 목적인 "보도, 비평, 교육, 연구"는 예시적인 규정으로 그 밖에 예증, 해설, 보충, 강조를 위한 인용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위 규정에서 말하는 "정당한 범위"에 속하기 위하여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충,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 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 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소설 중에 설정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에서 타인의 저작물 등 자료를 인용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명시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인용 부분을 자신의 창작 부분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지 아니하며, 또한 인용으로 말미암아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용 이용행위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소명자료에 의하면, (가) 이 사건 제1인용 부분은 이 사건 소설 제1권 286면, 제2권 285면, 제3권 283면 등 총 854면 중에서 차지하는 면수가 약 10면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소설 구성상의 필요, 즉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를 당시의 시대상황에 부합하게 하고 또 그럴듯하게 맞추기 위한 목적에서 원문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은 채 거의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피인용 부분과 창작 부분 사이의 행을 비우

19) 서울고등법원 1997. 9. 7. 선고, 96나18627 판결.

는 방법 등으로 피인용 부분과 창작 부분이 구별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각각 인용 부분 말미에 "위의 내용은 공석하 편저, 도서출판 뿌리에서 출간한 『핵물리학자 이휘소』에서 인용함"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편지와 이 박사의 일기는 도서출판 뿌리에서 펴낸 공석하 편저, 『핵물리학자 이휘소』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힙니다."라고 인용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 사건 소설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부분의 출전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러한 인용구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뒤(위 소설 제2권 101면 14행부터 21행까지와 같은 면 24행부터 102면 10행까지)에서 다시 그 중 일부를 인용하면서 위와 같은 인용구를 거듭 기재하지 않고, < >속에 위 인용부분을 기재하여 피신청인의 창작 부분과 구별하였던 것으로 보임]. 또한 이 사건 소설 각 권 중 작가의 말에서 "저서의 일부를 인용하도록 해 준 공석하 선생께 감사한다"는 문구를 삽입하였다.

『핵물리학자 이휘소』는 1992년 7월 5판이 나온 후 신청인 스스로 이를 절판시키기로 하여 그 후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 인용 부분으로 인하여 그 시장수요가 침해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사실(오히려 일반 국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아니하던 망인이 이 사건 소설로 인하여 전국민적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망인 관련 유사작품에 대한 시장수요가 증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이 인정되므로, 이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 인용 부분은 그 표현형식상 이 사건 소설의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고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 저작권법 제25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에 해당되고, 또한 창작 부분과의 구별을 가능하게 함과 아울러 인용의 출처를 밝힌 점에 비추어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저작재산권(복제권 및 배포권) 침해행위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인용 부분의 인용출처와 원저작자인 신청인의 성명을 밝힌 이상 신청인의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

서적 제작 및 판매 금지 사건에서, 신청인 갑은 1989년 8월 10일 김영사에서 발행된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에세이집의 저자이고, 피신

청인 을은 신청인을 모델로 한 평전인 "김우중, 신화는 있다"의 저자이며, 피신청인 병은 위 "김우중, 신화는 있다"의 발행인이다. 그런데 위 평전에는 갑에게 저작권이 있는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의 내용 중 115개 문단이 166면에서부터 192면까지에 걸쳐 전재되어 있고, 갑이 1976년 상을 받으면서한 수상연설인 "한국기업이 사는 길"과 1986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톱 매니지먼트 포럼(The 1986 Top Management Forum)에서 연설한 "성장과 경쟁력의 공유 -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를 위한 제언"의 내용을 무단 인용하고 있어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저작권법 제25조), 여기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되는 것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 을은 위 평전 중 "꿈을 가져라"라는 제목의 장(章)에서 신청인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인용근거를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명시한 다음, 거기에서 신청인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조금씩 발췌하여 소제목을 새로 붙여서 인용하고 있으며, 또한 갑이 기업과 나라의 경제에 대단한 꿈을 안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자료로서 위 "한국기업이 사는 길"과 "성장과 경쟁력의 공유 - 한국과 유럽의 비즈니스를 위한 제언"의 두 연설문을 출처를 밝히고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 위 평전은 총 302면인데 위 인용부분의 분량은 33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평전은 그 저작물의 성질상 모델로 되는 사람의 생애에서의 주요 사건이 다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고, 특히 그가 기업경영인인 경우에는 경영철학 등이 소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그가 저술한 책자나 연설문이 있다면 그것을 참고

자료로서 평전의 내용 중에 소개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을이 위 평전을 쓰면서 위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와 신청인의 연설문을 인용한 것은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인 관계에 있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용내용, 분량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용은 정당한 범위 내의 인용이라고 보여지고, 그 인용방법도 비교적 명확하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신청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공정한 인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대학입시용 문제집’ 사건

대학입학 본고사의 입시문제를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실은 것을 각 대학 총장들이 저작권 위반을 이유로 고소하여 대법원이 저작권 침해를 인정판 사건이다.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문제집에 위 각 대학의 국어, 논술, 영어, 수학 등의 본고사 문제 전부를 인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인용저작물은 대학진학지도라는 교육목적을 위한 것이고 또 위 문제집에서 차지하는 각 대학의 본고사 문제의 비율이 국어 9.7%, 논술 2.8%, 영어 6.9%, 수학 I 9.9%, 수학 II 9.7%에 불과하므로, 저작권법 제25조가 정하는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²⁰⁾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교육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2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이 대학입시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개개의 문제의 질문을 만들기 위하여 그 질문의 일부분으로서 위 대학입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위 대학입시문제의 질문과 제시된 답안을 그대로 베꼈고, 이로써 문제집의 분량을 상당히 늘릴 수 있었으며, 특히 위 대학입시용 문제집에 학교법인들이 저작권을 갖는 본고사 문제를 전부 수록함으로써 본고사 문제에 대한 일반 수요자들의 시장수요를 상당히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대학 입시문제에 관하여 저작권을 주장한 바 없었다고 하여 결론이 달라진다고 할 수도 없다.”

2) ‘nud 사진 게재’ 사건

일본의 시사주간지 ‘플래쉬(FLASH)’ 51호(1987년 12월 8일자)에 "한국으로부터 비장의 nud 사진 대공개"라는 제호로 게재된 사진 중 일부를 가져다가 국내 월간지 "직장인" 1988년 6월호에 "한국여대생. 연예인 nud사진이 포르노로 둔갑"이라는 제목아래 전채한 것이 저작권 위반으로 되는지 문제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음란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으며 비평을 위한 인용에 해당하므로 면책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판단한 후, 정당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²¹⁾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인용의 요건 중 하나인 "정당한 범위"에 들기 위하여서는 그 표현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21)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원심판결은 피고들의 발행잡지에 위 사진들을 게재함에 있어 그 방법과 범위가 보도, 비평의 인용에 있어서 정당한 범위이거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게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기사 중 사진부분을 제외 한 해설기사는 "직장인" 및 "뷰티라이프"의 해당 2면 중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그것도 대부분이 위 "플래쉬"지의 해설을 그대로 번역한 것인바, 이 사실과 위에서 본 이 사건 게재사진들의 성상, 크기, 배치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인용저작물이 좋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주의 관계에 있다고 보여져 피고들의 이 사건 저작물의 인용은 보도, 비평 등을 위한 정당한 범위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유설시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 판단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저작권법 제 25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한국어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

한국방송공사의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를 무단 전재한 사건에서,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려 재구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문제와 동일하지도 않으며 기출문제를 수록하는 것은 그동안 수험서를 발간해온 출판업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법원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²²⁾

“이 사건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함이 분명하며, 이와 같은 저작물을 직접 보고 베낀 것은 아니더라도 수험생들의 기억력을 되살리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이를 복원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저작물의 복제에 해당한다 볼 것이며, 질문과 답안이 전부 게재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거의 모든 문제와 그 정답이 수록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수험서에 실은 문제와 실제 이 사건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

22)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930 판결.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교육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한국어능력시험용 문제집을 제작함에 있어서 개개의 문제의 질문을 만들기 위해 그 일부분으로서 기출문제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한국어능력시험 기출문제의 질문과 답안을 통재로 게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험서에 있어 상당한 분량(총 1169쪽 중 66쪽)과 위상(서적 표지에 굵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다)을 차지하고 있고, 한국방송공사가 저작권을 갖는 위 기출문제에 대한 일반 수험생들의 수요를 상당 부분 대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인용을 가리켜 교육을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고시학원 출판물 편저자 표시’ 사건

고시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학교교육학’이라는 제목의 서적을 간행함에 있어 원고인 서울시의 허락 없이 원고가 발간한 교직실무편람의 내용 중 4면부터 360면까지를 그 차례나 글자체, 글자크기 등만을 바꾸어서 총 288면을 그대로 게재하였고 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피고를 편저자로 표시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을 저작, 간행함에 있어 원고의 위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는 원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저작물은 이미 공표된 저작물로서 원고도 그 이용을 양해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위 저작권 침해 당시 이 사건 저작물의 복사본이 이미 유포되어 있었고, 또 원고는 이 사건 저작물의 발간사에서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을 원고 산하 교육원구원의 홈페이지에 수록하니 필요한 경우 뽑아서 이용하길 바란다고 하였음은 인정되나, 공표된

저작물은 교육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을 뿐인바 피고의 위와 같은 무단이용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의 위 발간사의 취지는 개개인이 사적으로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부분을 자유롭게 참고하라는 것일 뿐 피고처럼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복제, 판매하여도 된다는 뜻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소설마당’ 사건

출판사를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가 수탁하여 관리하는 작가 23인의 작품들을 허락없이 ‘독서교실’이라는 표제 하에 소설마당 제2 내지 제7권의 총 6권에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 전재한 것이다. 이에 원고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²³⁾

“피고는 먼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침해저작물은 고등학생들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게재한 것은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말하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4541호) 제2조가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위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 및 지도서, 그 외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의미하는데, 피고가 출판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위와 같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해당하거나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받은 인정도서에 해당하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도서가 교과용 도서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3)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279 판결

피고는 또,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바, 그 동안 출판업계는 교육 목적으로 출판하는 경우에는 업계의 관행상 출판계약 없이 출판하였고, 피고 경영의 관동출판사는 학생들 교육에 관한 참고용 도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로서, 이 사건 침해저작물 역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고급 사고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제작된 교육용 책자이므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에 이 사건 소설작품을 수록한 것은 위와 같은 관행에 따른 것으로서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25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이나 인용 목적 등에서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에 있어야 하고, 인용의 정도에 있어서도 피인용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인용하여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할 것이다.

우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행이 우리 출판업계에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사건 침해저작물의 경우를 보더라도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침해저작물이 대학입시 준비를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소설 감상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설들을 선정하여 수록하면서, 각 작품마다 작가를 소개하고, 작품의 주제, 줄거리, 단락, 플롯, 시점, 등장인물과 인물의 묘사 방법, 배경, 문학사적 의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한 작품해설을 실고는 있으나, 작품에 대한 해설은 작품을 감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분량에 그치고, 실제로 그 각 작품 자체를 읽을 수 있도록 단편의 경우에는 전문을, 중·장편의 경우에도 상당한 분량을 인용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그 인용부분이 주가 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는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어 원저작물의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할 것이고, 인용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거나 정당한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 유 없다 할 것이다.

6) ‘교과서 삽화 사진’ 사건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삽화의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없이 수록한 학습참고서 출판사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교과서의 내용인 글과 삽화는 분리하여 이용 가능하므로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편집저작물이라고 판단한 후 인용을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²⁴⁾

“피고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는데, 위 표준전과는 교과용 도서에 속하므로 보상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서, 지도서, 인정도서를 말하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의 주된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구분되고, 지도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교사용의 주된 교재를 말하며,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도서와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도서로 구분되며, 인정도서라 함은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같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승인을 얻은 도서를 말하는데, 위 표준전과가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거나 교육부장관의 검정 또는 승인을 받은 도서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참고서는 교과용 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는데, 위 표준전과는 교과서에 대한 주석서와 같은 것이고, 위 표준전과에서 인용한 것은 교과서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전제로서 교과서의 면을 채록한 것에 부수하여 피고 저작물에 삽화가 보조적으로 인용되었을 뿐이며, 삽화가 게재된 교과서의 면수가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증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영리를 목적으로 참고서인 표준전과를 발간하여 왔는데 표준전과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율이 5분의 2(192/480)이고, 그 중 그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3분의 1이며, 그 그림 중 원고의 삽화가 약 2분

24) 서울민사지법 1992. 6. 5. 91가합39509 판결

의 1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표준전과의 발간 목적 및 원고 저작물의 피고의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거래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항변은 이유 없다.”

7) ‘이랜드 사람’ 사건

신청인 갑은 기독교적 세계관을 적용한 기업윤리나 직장인의 행동규범들을 ‘이랜드 스피릿’이라는 제목 하에 강의해 왔는데 『이랜드 사람들』이란 저서의 저자 을이 이 책을 통해 강연내용인 그 제목 및 소제목, 구체적 표현방법 등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여 출판한 것이다(총 338면에 중 제187면부터 제301면까지의 114면 분량). 갑은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출판행위 금지를 청구하였고, 을은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이라고 하면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인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음의 두 가지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우선 이랜드 스피릿이 이랜드의 경영지침 또는 사원의 행동지침에 지나지 않는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이므로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을의 주장에 대하여, 이랜드 스피릿은 갑이 강연의 형식으로 이미 공표한 것이므로 단순한 사상 또는 관념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저작권법에 의하면 그 인용의 범위는 표현형식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 저작물에 대하여 종의 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고, 인용의 방식 및 정도에 있어서도 그 출처를 명시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문을 자신의 저작물과 구별되도록 해야 하며, 피인용 저작물을 지나치게 많이 인용하거나 전부인용하거나 원저작물에 대한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등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는 제한이 분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이랜드 사람들’이란 서적은 이랜드 대표자의 강연 내용을 거의 그대로 전재하면서 그 비평이나 연구는 실질적으로 거의 행하고 있지 않아 단

순한 소개 정도에 그치고 있으면서 그 출처가 명시되지도 않았고, 자신의 저작물과 피인용저작물이 분명히 구분되고 있지도 않으며, 그 인용 분량이 위서적 중에서 본문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인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인용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판단되며, 아울러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신청인 A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정리

위의 사건들은 대체로 영리 목적으로 다른 저작물을 이용한 사건들로써, 이 사건들에서의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비영리 목적인 OER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우리 판례는 문제된 사건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작권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고, 따라서 어느 경우에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정당한 인용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판단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다. 다만 판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양적측면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이용한 저작물에서 차지하는 분량이다. 예컨대 영화 ‘리브레터’ 사건에서의 110여분 중에 30초가량 분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사건의 854면 중 약 10면 정도는 극히 일부분으로 정당한 인용으로 보고 있다. 반면 ‘nud 사진 게재’ 사건에서의 3분의 1 정도, ‘고시학원 출판물 편저자 표시’ 사건에서의 360면 중 288면, ‘소설마당’ 사건에서의 7권 중 6권, ‘이랜드 사람’ 사건에서의 3분의 1 정도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판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양적 기준은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나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각 사안마다 그 기준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김우중, 신화는 있다’ 사건에서는, 302면 중 33면은 평전의 성격상 연설문 등을 소개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것으로 판단한데 반하여, ‘SBS 방송’ 사건에서의 3분, ‘한국어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에서의 1169쪽 중 66쪽, ‘교과서 삽화 사진’ 사건에서의 15분의 $1(2/5 \times 1/3 \times 1/2)$ 은 삽화

의 성격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공정한 거래 관행에 합치된 인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작권 판단에서 질적 측면이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질적 측면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시장 수요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인지 여부이다. 이것은 영미에서 저작권 침해요소로써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경쟁관계’의 요소인데, ‘한국어능력시험용 문제집’ 사건, ‘소설마당’ 사건 등에서는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고 본데 반하여, ‘리브레터’ 사건에서는 시장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최근 학설 중에서는, 인용의 정당한 범위란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분인용인 경우에는 피인용 저작물의 10% 이하를, 전부인용인 경우에는 피인용 저작물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부가해설이나 비평이 있어야 인용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²⁵⁾ 다만 이러한 기준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예컨대 100면 정도의 연구논문을 인용함에 있어서 숫자적으로는 9면 정도를 인용한다면 정당한 범위라고 할 수 있으나, 그 논문이 서론, 차례, 참고자료,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범위, 역사적인 유래 등이 80면 정도를 차지하고 마지막 결론이 10면 정도인데, 그 결론 중에서 9면을 인용하였다면 실질적으로는 그 논문의 인용이 아니라 복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한 전부인용에 있어서도 예컨대 사진 한 장을 어떤 도서의 한 면으로 게재하고 2면 이상의 해설 또는 비평을 부가하면서 그 사진에 대한 해설, 비평이 아니라 그 사진과 관계가 없는 다른 것에 대한 해설, 비평을 하였다면 정당한 범위의 인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²⁶⁾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통해서 보건대, 교육이라는 비영리적 목적에서 다른 저작물을 적은 분량에서 인용하고 그것이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만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아

25) 허희성, 전계서, 214면 참조.

26) 허희성, 전계서, 215면.

직 판례가 많이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정당한 인용이 될 것인지 여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하겠다. 따라서 해외의 입법례와 축적된 판례의 입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저작물의 인용은 국내 저작물에만 한정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IV. 해외의 인용 해석론

1. 미국

가.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

미국에서 인용의 문제는 공정이용(Fair Use)의 법리, 즉 저작권법 제107조(17 U.S.C §107) 규정에 기초하여 판단하고 있다. 원격 교육에 대해서는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of 2002 (TEACH Act)가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되나, 그 외의 범위에서는 저작권법 제107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교실에서의 수업 이외의 범위라 할 수 있는 OER에 있어서는 공정이용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다. 본래 판례를 통하여 적용된 공정이용의 법리가 1976년 개정된 미국 저작권법에 조문으로 규정된 것인데, 제107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07조 비평, 논평, 시사보도, 수업,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 제작 또는 기타 제10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저작물 이용이 상업인지 여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 (2) 원저작물의 성질
-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실재성
- (4) 이용이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주는 영향

나. 공정이용의 판단 요소

1)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

첫 번째 기준인 저작물 이용의 성격과 목적에 있어서는 저작물의 사용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인지 여부를 살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이용은 공정이용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왔다.²⁷⁾ 판례는 저작물의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제를 공정이용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상업적 이용이 모두 공정한 이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업적 이용과 관련된 문제점 중 하나는 사용자가 원저작물 이용에 대한 적절한 사용료, 예를 들어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은 채 원저작물을 활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지 여부이다. 교육적 이용은 일단 공정이용성 판단에 유리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의 이용이라고 해서 공정이용으로 단정되는 것 또한 아니다.²⁸⁾

이 첫 번째 요소와 관련하여 비영리성 교육 목적은 교실이나 원거리 교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파악하는 데에 있어 비중 있는 근거가 된다. 저작물 이용이 일단 상업적으로 되는 순간, 그 이용은 더 이상 순수한 교육 목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보통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불하도록 권해지므로 공정이용 주장은 대항 수단으로써의 실효성이 현저히 약화된다. 예를 들면, 교수나 대학이 온라인 원거리 교육 과정을 다른 대학에 팔려는 행위는 상업적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정이용으로 방어할 수 없게 된다.²⁹⁾

한편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와 함께 중요하게 따져야 하는 것으로, 개변적 이용(transformative uses)인지 여부이다.³⁰⁾ 개변적 이용은, 원저작물을

27) Kate Irwin, Copyright Law-Librarians Who TEACH: Expanding the Distance Education Rights of Libraries by Applying the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of 2002., 29 W. New Eng. L. Rev. 875, 889 (2007).

28) Macmillan v. King, 223 F. 862, 867 (D. Mass. 1914)

29) JOHN VAUGHN ET. AL., ASS'N OF AM. UNIVS., Campus Copyrigh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Basic Guide to Policy Considerations (2005), available at http://www.aaupnet.org/aboutup/issues/Campus_Copyright.pdf.

30) Campbell v. Acuff-Rose Music, Inc. 510 U.S. 569, 579 114 S.Ct. 1164. 이 사건에서는 공

그 통상의 목적이나 방법과 다른 형태로 이용하여, 원저작물에는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사회에 가져오는 이용행위를 말한다. 개변적 이용은 저작권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저작물 이용의 경우와는 다른 새로운 이용가치를 사회에 가져오는 점에서, ‘학문·예술의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기여하는 행위이고, 또한 원저작물의 통상의 이용형태와는 다른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원저작물의 출판 등)과 시장에서 경합할 가능성이 적고, 아울러 저작권자에게 미치는 불이익도 적다고 정형적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문제가 된 이용행위가 개변적 이용인 경우에는 첫 번째 요소에 있어서 공정이용의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예컨대 패러디는 ‘개변적 이용’의 전형적인 예이다. 패러디는 원저작물을 풍자할 목적에서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고, 원저작물의 통상 이용에서는 알 수 없는 원저작물의 새로운 측면을 사회에 제시한다고 하는 적극적인 의의를 가짐과 함께,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과의 경합성도 적다. 나아가, 개변적 이용은 패러디와 같이 원저작물을 물리적으로 변형하고 새로운 표현가치를 가져오는 행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원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형태와의 경합성이 결여되어 있고, 원저작물의 통상의 이용형태에서는 실현할 수 없는 새로운 부가가치를 가져오는 이용행위를 넓게 포섭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³¹⁾ 최근의 판결들에서는 검색 사이트에 있어서의 검색결과 표시 등도 ‘개변적 이용’의 한 종류로써 공정이용으로 인정한 바 있는데,³²⁾ 다른 저작물을 교육목적에서 사용하는 OER의 경우도 이러한 개변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원저작물의 성질

조문에서 명시된 두 번째 기준인 ‘원저작물의 성질’은 정보전달을 위한

정이용의 첫 번째 요소의 판단에 있어서는 개변적 이용인지 아닌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만 한다고 하고, 개변적 이용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

31) Jeremy Kudon, Form over Fuction: Expanding the Transformative Use Test for Fair Use, 80 B. U. L. Rev. 579, 606 (2000).

32) Field v. Goole, Inc., 412 F. Supp. 2d 1106, 1122(D. Nev. 2006);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Google, Inc., 487 F. 3d 701, 721(9th Cir. 2007).

작품인지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작품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기준이다. 이 기준의 배경은 ‘독창성이나 발명성의 산물’인 작품을 단순히 ‘성실함의 산물’인 작품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자는 데에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소설 등의 예술작품으로부터 학술 잡지 등의 사실작품, 프로그램 등의 기능작품까지 다양한 작품을 보호하고 있지만, 저작권법이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는 체계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저작권법의 보호 중심은 창작성이 높은 예술작품에 있고, 따라서 예술작품은 기타 작품에 비하여 저작권법상 상대적으로 강한 보호를 부여할만하다. 이 때문에 이용된 저작물이 예술작품인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된다. 이에 반하여 사실작품이나 기능작품은 그 성질상, 표현의 창작성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예술작품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약한 보호로 충분하다는 것이다.³³⁾ 이용된 저작물이 사실작품, 기능작품인 경우에는 학문이나 기술의 발전 등의 견지로부터 예술작품에 비하여 그 복제 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의 성립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작품은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작품보다 보호의 필요성 정도가 낮으므로 정보전달의 목적으로 원저작물을 이용했다면 공정이용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다. 더욱이 특정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은 사회적으로도 널리 유포되어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이 있으므로 창작물보다 보호를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매우 창조적인 저작물, 이를테면 음악, 영화, 단편 이야기, 소설 등은 공정이용이 적용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³⁴⁾

3) 인용된 부분의 분량과 실재성

세 번째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허용된 ‘분량’이 단순히 이용 글자수나 이용 퍼센트와 같은 수학적 계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인용된 부분이 원저작물의 ‘가장 흥미있고도 가치있는’ 부분인지의 여부도 살펴보아야 한다

33) Pierre N. Leval, 103 Harv. L. Rev. 1105, 1111(1990).

34)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96(1984); Feist Pub'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52-56 (1991).

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방대한 분량의 원저작물의 단지 일부 내용을 차용했다하더라도 이 부분이 원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이 기준에 의해 공정한 이용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과 성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원저작물의 인용시에, 그 인용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이 기준을 상회하는 분량을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물의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이용해도 되는지 결정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 기준과 관련하여 수많은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다. 여기서 교실에서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에 공정이용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저작자, 출판자, 그리고 교육 전문가 등의 관련 당사자 대표들은 "교실 가이드라인(Classroom Guideline)"을 만들었다.³⁵⁾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실에서 저작물을 다수에 걸쳐 복사하여 이용하려면 간결성, 자발성, 누적 효과, 그리고 저작권 표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만일 어떤 문서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정의 주제에 마침 필요하고 한정된 시간 안에 허가를 받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에는 2,500 단어 이하에 한해 문서 전체를 복사하여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누적 효과 요건을 만족하려면 문서 전체의 복사물은 그 수업 과정에서만 이용되어야 하고 각각의 복사물은 저작권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학기 수업을 위해 또다시 복사되어서는 안 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그 누적 효과는 저작물을 허가없이 '출판'하는 것과 같게 된다. 충분한 시간이 주어진다는 가정 하에 만일 다음 학기에 그 문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교수는 저작자로부터 정식으로 저작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발성'의 요건으로 장기적인 저작물 이용 계획은 인정되지 않는다. 분명한 것은 저작물을 적은 분량 이용할수록 공정이용의 적용이 유리해진다. 그러나 적은 분량을 복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복사분이 저작물의 핵심을 담고 있다면 공정이용 적용이 불리하게 된

35) See Gary Wyatt, Satisfaction, Academic Rigor and Interaction: Perceptions of Online Instruction, 125 EDUC. 460, 460-61(2005); see also Sean Smith, The Positive and Challenging Aspects of Learning Online and in Traditional Face-to-Face Classrooms: A Student Perspective, 20 J. OF SPECIAL EDUC. TECH. 52, 55(2005).

다. 얼마나 적은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는 저작물 전체에 따라 달라진다. 1분 광고 방송 중 45초 분량은 공정이용이 적용되기엔 너무 길고 책 한 권에서 하나의 장은 공정이용 기준에 맞는다고 하고 있다.³⁶⁾

4)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줄 영향

이 마지막 기준인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줄 영향’은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게 하여 창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 제3자의 이용이 저작권자에 의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행위와 시장에서 경합하여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창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행위가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주는 영향이 크게 될 정도라면 공정이용의 성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다.³⁷⁾ 이렇게 네 번째 요소는 문제가 되는 이용행위가 저작권자의 창작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직접적으로 묻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종종 공정이용의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취급해왔다.

다만 공정이용의 최종적 목적은 저작권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이용에 의한 이익(사회공공의 이익)과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로 되는 저작물의 이용행위에 의하여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해도, 당해 이용행위로 인해 저작권자가 입는 불이익을 상회하는 이익이 인정된다면 공정이용의 성립을 긍정하고 있다.³⁸⁾ 따라서 네 번째 요소에 있어서의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경제적 영향의 정도는 문제가 되는 이용행위에 의하여 실현되는 이익을 고려해야만 한다. 피고의 이용에 상당한 이익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조금밖에 없어도 공정이용의 성립이 부정된다. 반면에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라도 피고의 이용이 중대한 사회적, 공익적 의의를 가지

36) see UNIV. OF TEX. SYS.,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OF BOOKS AND PERIODICALS, <http://www.utsystem.edu/ogc/intellectualproperty/clasguid.htm> (last visited Sept. 29, 2006).

37)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 2d 1510, 1526 (9th Cir. 1992).

38) Leval, supra note 32, p.1124.

는 경우에는 공정이용의 성립이 긍정된다.³⁹⁾

어떤 원저작물의 이용이 시장에 명백할 정도로 타격을 준다면 증명책임은 피고 즉 저작물 인용자에게 전환되어, 피고 자신이 원저작물을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초창기 공정이용의 여부는 분량이 많은 원저작물을 압축 요약하여 더 읽기 쉽고도 낮은 가격의 작품으로 출간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별되었는데, 이러한 압축요약본은 원저작물의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차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손해는 이미 발생한 손해만큼이나 중요한 기준이다. 이러한 원리는 저작권료 수입을 통해 원저작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저작권 활용 방법의 기초가 되었는데, 심지어 해당 작품이 모방 작품의 시장에 미칠 영향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원칙의 내용이다. 요컨대, 저작물의 이용으로 재정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바로 이 기준을 통해서 공정이용이 문제될 수 있다. 반대로,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해서 공정이용이 긍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통적인 교실에서 한정된 분량의 복사물을 나누어주는 경우 공정이용을 적용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미칠 잠재적 시장 가치 효과를 고려하기만 하면 된다. 온라인 교육의 전달 수단으로 인하여 교육자는 인터넷 상에 있는 모든 형태의 지적 재산을 이용 가능하게 하며, 원거리 교육에서는 교육 대상자가 잠재적으로 광범위하므로 저작물이 광범위하게 이용될 경우 저작자는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받게 된다.

39) MCA, Inc. v. Wilson, 677 F. 2d. 180, 183 (2nd Cir. 1981)은 피고에 의한 이용이 저작권자의 기대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면 적을수록 공정이용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증명하여야만 하는 공적인 이익은 적어도 좋다고 하고 있다.

2. 독일

가. 개정 전의 상황과 제51조의 개정

독일 저작권법은 제51조에서 인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와 유사하게 제52조a에서 교육·연구목적을 위하여 공중에게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⁴⁰⁾ 제5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을 조정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 2008년 1월 1일 저작권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었다. 즉 「다음의 경우에는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및 공공에 재생할 수 있다. (1) 각각의 저작물을 그 발행 후 독립한 학술저작물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경우, (2) 저작물 부분을 그 공표 후 독립한 언어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3)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각각의 부분을 독립한 음악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렇게 독일 저작권법의 인용 규정에서는 일반 조항을 두지 않고 동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별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예컨대 제51조 제2호는 언어저작물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어저작물 이외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직접 적용할 수 없으므로 판례는 다른 저작물에 대해서는 제51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는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영화저작물에 있어서의 인용에 대하여 독일연방법원은 제51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인용을 인정한 바 있다.⁴¹⁾ 여기에서 2008년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제51조를 일반규정화하고 종래의 개별규정을 예시·열거하는 개정형식을 취한 것이다. 개정된 제51조⁴²⁾는 다음과 같다.

40)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대학정보와 최신 동향 분석 자료집」, 2008, 49면 이하 참조.

41) BGH 4. 12. 1986, BGHZ 99, 162.

42) Zulässig ist die Vervielfältigung, Verbreitung und öffentliche Wiedergabe eines veröffentlichten Werkes zum Zweck des Zitats, sofern die Nutzung in ihrem Umfang durch den besonderen Zweck gerechtfertigt ist. Zulässig ist dies insbesondere, wenn
1. einzelne Werke nach der Veröffentlichung in ein selbständiges wissenschaftliches

제51조 그 이용이 특정한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을 목적으로 복제, 배포 및 공공에 재생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1. 각각의 저작물을 그 공표 후 독립한 학술저작물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경우
2. 저작물 부분을 그 공표 후 독립한 언어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3.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각각의 부분을 독립한 음악저작물에서 인용하는 경우

이 개정을 통하여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의 적용범위는 한정적이지 않게 되어 모든 저작물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었다. 다만 이것은 종래 판례의 해석상 인정되던 것을 개정에 의하여 명확화한 점에 의미가 있으며 종래의 논의가 개정에 의하여 달라지지 않는다.⁴³⁾

나. 공정 인용 판단의 요소

1) 제51조의 요건

먼저 독일 저작권법 제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 저작물 (selbständigen We가)’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51조 각호에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이 ‘독립 저작물’이어야 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이 개념은 우리나라의 주종관계와 대응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독일에서도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이라는 주종관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적어도 주종관계가 역전되어 있는 저작물, 즉 인용되는 저작물이 오히려 주된 내용이 되는 저작물은 독일에서 ‘독립 저작물’로써 인정되지 않고, 그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이 될

Werk zur Erläuterung des Inhalts aufgenommen werden,

2. Stellen eines Werkes nach der Veröffentlichung in einem selbständigen Sprachwerk angeführt werden,
3. einzelne Stellen eines erschienenen Werkes der Musik in einem selbständigen Werk der Musik angeführt werden.

43) <http://www.bmj.bund.de/media/archive/1174.pdf>

수 없다.⁴⁴⁾

또한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이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 28조와 동일하게 베른조약⁴⁵⁾에 의하여 규정된 것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용 요건과 동일하게 인용 목적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인용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을 정한 것이다. 따라서 인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와 유사하다. 다만 규정형식이 우리와 다르므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개정된 저작권법 제51조는 일반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호의 규정에 대한 그동안의 해석이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제1호는 학술저작물, 제2호는 언어저작물, 제3호는 음악저작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부인용과 부분인용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컨대 제51조 제1호에서는 제한 없이 ‘각각의 저작물’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제1호의 학술저작물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인용이 인정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제2호와 제3호에서는 그 문언이 저작물의 부분 또는 저작물의 각각의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분인용을 인정한 규정으로써, 언어저작물과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부인용은 인정되지 않고 부분인용이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통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⁴⁶⁾

2) 학술저작물에 대한 전부인용

제51조 제1호의 학술저작물에 대해서는 전부인용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여기에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내용 설명의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고 인용의 목적이 내용 설명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인용이 인정되지 않는다. 전부인용의 전형적인 예로써는 문학서에 시를 인

44) Artur-Axel Wandtke/Winfried Bullinger,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 3. Aufl. C. H. Beck, 2009, UrhG § 51 Zitate, Rdnr. 8.

45) 베른협약의 정식명칭은 ‘문학 및 예술저작물보호에 관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으로 저작권 보호에 관한 기본 조약이다. 협약은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1886년 체결된 이래 7차의 개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하였다.

46) Gerhard Schricker, Urheberrecht, Kommentar 3. neubearbeitete Aufl. C. H. Beck, 2006, § 51 Rdnr. 25.

용하는 경우, 미술서에 조형미술 저작물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 역사서에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기록문서를 게재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특히 조형미술 저작물이 학술저작물에 인용되는 경우에는 문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그 미술저작물 사진의 게재가 인정된다. 다만 사진이 문장의 보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인용이 인정되나, 문장과의 관계가 희박하고 단지 장식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지나지 않거나 문장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하여 사진을 게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⁴⁷⁾

또한 제51조 제1호에서는 ‘각각의 저작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각의 저작물’이라는 문언의 해석에 대한 유명한 판례가 있다. 이것은 특정 저작자의 저작물을 다수 인용하는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다수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것이 각각의 저작물을 채록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투었던 사건으로써 지금까지도 중요한 판례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러시아의 유명한 화가 칸딘스키의 그림 전체 1150개의 작품 중 69개의 작품이 학술저작물에 인용되고 게재된 사건이다.⁴⁸⁾ 독일연방법원은 인용하는 저작물의 전체 양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정 저작자의 다수의 저작물이 인용된다고 해도 각각의 저작물에 해당하고, 그러한 인용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3) 언어 및 음악저작물

제2호는 언어저작물에 대하여 부분인용을 인정한 규정이다.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독립한 언어저작물에 관해서는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저작물 부분의 인용이 인정되고 있다. 물론 언어저작물이라고 해도 학술적인 것이라면 제1호가 적용되게 되고, 전부인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나, 학술적이지 않은 언어저작물의 경우에는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47) BGH, 3. 6. 1994, BGHZ 126, 313; BGH 23. 5. 1985, GRUR 1986, 59

48) BGH, 3. 4. 1968, BGHZ 50, 147 - Kandinsky I

한편 제3호에서는 음악저작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통설은 음악저작물의 인용은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인용의 예외라고 이해하고 있다.⁴⁹⁾ 부분인용의 경우, 언어저작물은 공표되고 있으면 되지만, 인용된 음악저작물은 발행되어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음악저작물의 경우 통상은 음호매체 또는 악보의 형태로 제공되어 있을 필요가 있다. 음악저작물의 인용은 음악저작물 가운데 다른 저작물의 각각의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로써, 음악저작물로부터 차용된 부분이 인용한 음악저작물 가운데 식별 가능하여야 한다. 물론 음악저작물의 인용은 멜로디의 차용이나 또는 변주곡에 있어서의 테마의 차용과는 구별된다.

4) 그 밖의 저작물의 인용

제51조에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개정 전부터 학설과 판례는 제51조의 규정을 다른 저작물의 인용에도 적용하여 왔다. 먼저 화상(畫像)의 인용과 관련하여 화상이 독립한 저작물에서 인용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인용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부분인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화상저작물 가운데에는 사진저작물이나 그림이나 조각의 조형미술저작물 등도 포함되는데, 부분인용을 인정하면 개변이 가해지므로 전부인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상의 인용인데, 영상에 관해서도 물론 규정이 없으나, 해석상 영상저작물은 언어저작물로 보고 제51조 제2호의 규정이 유추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한편 OER과 가장 관련되는 멀티미디어 저작물에서의 인용 또는 멀티미디어 저작물로부터의 인용에 대해서도 물론 저작권법에 규정이 없다.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라고 하지만 그 개념이 매우 불명확하고 광범위하여 어떠한 형식의 저작물이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라고 단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멀티미디어 저작물의 많은 형태가 디지털 형식의 저작물로 될 것으로 추측되므로, 그러한 디지털 저작물이 학술논문이라면 학술저작물로써 다루어져

49) Schricker, a. a. O., Rdnr. 27.

제1호가 적용되고, 음악작품이라면 음악저작물로써 취급되게 되어 제3호가 적용될 것이다.⁵⁰⁾ 한편 독일 저작권법 제52조a에서 학술저작물과 수업에서의 설명에 대해 동일하게 저작권이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OER에서의 저작권 활용은 학술저작물의 인용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일본

가. 저작권법 제32조의 규정 체계

일본 저작권법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정체계를 취하고 있어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제30조 내지 제50조에서 언급하고 있고, 인용에 관한 규정을 제32조 제1항에서 두고 있다. 우리와 거의 동일하게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또한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에서는 특별하게 저작권을 제한하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둔 것이다. 본래 사상과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은 무의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축적되어 온 저작물에 기초하여 창작되는 것이므로 인용에 의하여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하는 것이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학문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헌법상의 요청에도 부합한다는 취지이다.⁵¹⁾ 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제32조 ①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이 규정으로부터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요건으로써 ① 인용되는 저작물이 공표되어 있을 것, ② 인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할 것, ③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에서 행해질 것이라는 요건과, 제43조 제2호

50) Wandtke/Bullinger, a. a. O., Rdnr. 1. ff.

51) デジタルコンテンツ委員会「著作権法における「引用」について」知財管理58巻5号667頁 (2008).

로부터 ④ 번안(예컨대, 요약 등)을 하지 않을 것, 또한 제48조 제1항으로부터 ⑤ 인용되는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할 것 등이 요구된다. 이 중 ②와 ③에 대해서는 특히 일반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전통적인 인용 기준

1) 패러디사진 사건

인용에 있어서 어떠한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가장 유명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은 일명 ‘패러디사진 사건’이다.⁵²⁾ 인용된 사진은 저명한 사진가가 촬영한 눈 덮인 산의 사진인데 이것은 촬영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 유명한 사진이다. 이에 대하여 패러디한 사진은, 이것도 매우 유명한 패러디스트의 작품인데 타이어 그림을 오리지널 사진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매우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패러디로써 유명하다.

이 사건은 예술논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유명해진 사건으로써, 원심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으나 최고재판소에서는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최고재판소는 “인용이란 소개, 참조, 논평 기타의 목적으로 자기 저작물 중에 타인의 저작물을 원칙적으로 일부를 채록하는 것을 말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기 때문에 위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인용을 포함한 저작물의 표현형식상,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인용되어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고(이것을 명료구별성의 요건이라고 부른다. 즉 양자가 명료하게 구별되어야만 한다), 또한 위 양 저작물 사이에 전자가 주, 후자가 종의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한다(이것이 부종성의 요건으로 불려진다).”고 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그 후 ‘명료구별성의 요건’과

52) 最判 昭和55年(1980년) 3月 28日 民集 34卷3号244頁.

‘부중성의 요건’이 인용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되었다. 먼저 위 사건에 있어서는 명료구별성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데, 즉 패러디 저작물을 보아도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오리지널 사진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패러디로 부가된 것인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부중성의 요건에 있어서는 가치적으로 판단하면 다소 모호하나 양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오리지널 사진이 9할 이상을 점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⁵³⁾ 위 사례는 구저작권법 하에서의 판결이지만 이후 현행법 하에서도 이 기준을 사용한 판결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최근까지 법원의 입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나카다 히데토시(中田英寿) 사건⁵⁴⁾

이 사건은 유명한 축구선수인 나카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건으로 유명하나, 인용문제도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진 사건이다. Y출판사가 ‘나카다 히데토시, 일본을 플러스로 이끈 남자’라는 서적을 발행하였으나 그 중에는 나카다와 축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생활상의 에피소드를 기술하였고, 나카다의 중학생 시절의 시가 기재되어 있었다. Y는 인용의 성립을 주장하였으나 전문 기재라고 하는 기재의 모습뿐만 아니라, 시에는 ‘중학의 문집에서 나카다가 쓴 시. 강한 신념을 느낄 수 있다’라는 간단한 코멘트를 붙인 것뿐이었기 때문에, 독자는 시를 독립하여 감상할 수 있고, Y의 목적은 창작활동이 아닌 나카다가 쓴 시의 소개 자체에 있다고 인정하여 주종관계요건을 부정하였다.

3) 번즈 콜렉션 사건⁵⁵⁾

Y신문사가 ‘번즈 콜렉션전’을 국립서양미술관에서 개최하는 것과 관련하여 입장권·칼라 특집 신문기사에 출판작품의 복제를 한 바, X(피카소의 상속인의 대표자)가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여 제기한 침해소송이다. 문제로

53) 田村善之「著作権法32条1項の「引用」法理の現代的意義」コピライト47(554)号12頁 (2007年).

54) 東京地判 平成12年(2000年)2月29日 判時1715号76頁.

55) 東京地判 平成10年(1998年)2月20日 知的裁集30卷1号33頁

된 신문기사는 5건이나, 모두 인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 중 주종관계요건에 있어서 부정된 것은 3건으로써 일례를 든다면 그림의 복제와 저명인의 담화를 실은 칼라특집기사에 대하여, 피카소의 그림에 대응하는 여우의 담화에 의한 새로운 창조부분은 약하고 그림의 복제를 인용할 필요성이 미약한 점, 독자가 받는 인상은 담화보다도 칼라인쇄의 그림 쪽이 큰 것으로부터 오히려 주안점은 그림의 복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주종관계를 부정하였다.

4) ‘탈 고마니즘 선언’ 사건⁵⁶⁾

만화가 X의 서적 ‘탈 고마니즘 선언’에 대하여 Y가 이를 비판하는 책을 집필하였으나 그 중에서 X서적의 만화가 57컷에 걸쳐 채록되어 있었고, X는 복제권 침해를 주장하였다.

1심과 항소심 모두 주종관계의 성립을 긍정하여 인용의 항변을 인정하였다. 만화에 대하여 문자만이 아니라 그림까지 채록된 것을 X가 문제시하였으나, 1심은 채록의 독자에 대한 효과에 있어서 논설의 대상을 명시하고 예증·자료제시으로써 Y의 논설의 이해를 돕는 것이라는 점과, 비판대상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하여 그림까지 인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공소심은 비판·비평의 목적이라는 점과 피인용부분이 X의 만화의 일부로써 반론에 필요한 한도를 넘지 않았다는 점 등으로부터 만화부분의 독립한 감상성을 긍정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종관계 요건의 충족을 인정하여 인용을 성립시켰다. 인용의 목적을 주종관계를 긍정하는 방향에서 고려한 중요한 사례로써 참고할만하다.

5) ‘雪月花’ 사건⁵⁷⁾

이 사건은 피고가 조명기구의 광고선전용 카탈로그 제작을 위하여 방을

56) 東京地判 平成11年(1999年)8月31日 判時1702号145頁; 東京高判 平成12年(2000年)10月17日 判時1724号124頁.

57) 東京地判 平成11年(1999年)10月27日 判時1701号157頁; 東京高判 平成14年(2002年)2月18日 判時1786号136頁.

빌리고, 조명기구를 배치하고 사진촬영을 한 바, 여기서 배경으로 걸려있던 원고의 글과 그림이 사진 속으로 들어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제작한 카탈로그에 당해 저작물이 복제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이다. 법원은 카탈로그에 복제된 저작물의 사이즈가 원물에 비하여 매우 작다는 점을 받아들여 당해 카탈로그에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 재생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가 원고의 저작물을 제3자에게 감상시키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저작물 배경에 원고 저작물이 부수적으로 들어가 버린 데 지나지 않는다고 한 점이다. 법제도에 따라서는 이러한 부수적인 이용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으나,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는 일본에서도 이러한 부수적 이용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저작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고려한 것이다.

6) ‘혈액형과 성격’ 사건⁵⁸⁾

이 사건은 타인의 저작물을 요약하여 인용하는 것이 허락되는가가 다투어진 사건이다. 저작권법은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일정 조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으나(일본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제32조는 본래 저작물의 표현 그대로의 형태로 인용하는 것을 상정한 조문으로서, ‘요약’과 같이 저작물의 표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허락되는가는 별도로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43조는 각각 제한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 변안⁵⁹⁾ 등 저작물을 2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는가를 규정한 조문이다. 동조에 의하면 인용의 경우에는 ‘번역’에 의한 이용만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조의 문리해석에 의하면 요약에 의한 인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된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원저작물을 넓은 범위에서 인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문을 그대로 길게 인용하는 것보다도 원문의

58) 東京地判 平成10年(1998年)10月30日 判時1674号132頁.

59) 외국 문학작품의 줄거리나 사건은 그대로 두고, 인물·장소·풍속 등을 자국 것으로 바꾸어 개작하는 것.

취지에 충실한 요약에 의한 인용을 인정하는 방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적고, 또한 보다 적절한 인용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 요약인용을 인정할 실제상 필요성이 있는 것을 지적하였다. 제43조는 각 제한규정에 관하여 2차적 이용을 인정할만한 전형적인 예를 규정하고 있는데 지나지 않고, 인용에 관하여 요약에 의한 인용을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취지로는 해석되지 않는 것으로서 요약인용을 적법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새로운 경향

그런데 최근에는 인용에 대한 ‘명료구별성의 요건’과 ‘부종성의 요건’이라는 두 가지 요건에서 탈피하여 종합적으로 인용을 판단하려는 유력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⁶⁰⁾ 그 견해에서는 우선 앞에서 언급한 패러디사진 사건에서 제기된 두 가지 요건은 구저작권법하의 판결이므로 현행법 제32조 제1항의 조문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본래 구저작권법에서는 우리나라 구저작권법과 마찬가지로 ‘절록 인용’⁶¹⁾이라는 단어가 인용 요건에 있었다. 그것에 대하여 현행 저작권법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것으로 인용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견해는 조문의 어디에 대응하여 논의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한다. 또한 부종성의 요건이라고 불리고 있을지라도 여기에서는 다양한 요소를 가지고 이익을 형량하고 있다. 따라서 부종성의 요건이라고 하지만 재판소는 가치판단을 하고 있고 양적인 기준처럼 보여도 실은 종합형량을 하고 있는

60) 飯村敏明「裁判例における引用の基準について」著作権研究26号91頁以下(2000年); 上野達弘「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307頁(『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論集』法学書院(2003年)).

61) 구 저작권법에서는 발췌 인용 또는 절록(節錄) 인용만을 허용하였다. 이것은 일부분을 발췌하거나 알맞게 줄여야만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었다. 또한 인용할 수 있는 매체도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만 한정된 적이 있었다. 따라서 저작물의 전체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 미술·사진·시 등은 인용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또한 단행본을 집필하는 경우에도 인용할 수 있는 길이 딱히 있었던 적이 있었다.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원래의 조문에 입각하여 조문 그대로 종합형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먼저 해당 조문에 따른 후, 미국의 공정이용과 같은 요건론을 전개하여 ‘피인용 측 저작물 전체에서 해당되는 피인용부분의 비율, 피인용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주는 경제적 영향, 인용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는 것이 새로운 유력한 경향이다. 이에 따라 몇 개의 판결도 나왔는데, 그 하나는 ‘절대음감사건’이다.⁶²⁾ 이 사건은 유명한 음악가 레너드 번스타인의 연극 각본의 저작권이 주장된 사건인데, 그것을 ‘절대음감’이라는 책의 어느 하나의 장에 그대로 실은 것이다. 역시 타인의 저작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저작권 침해로 되었다. 그러나 기존 판례가 제시하던 두 가지 요건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조문에 따른 요건론에 따라 종합형량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① 본건 서적의 목적, 주제, 구성, 성질, ② 인용복제된 원고 번역부분의 내용, 성질, 위치, ③ 이용의 모습, 원고 번역부분의 본건 서적에 접하는 분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있더라도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라고 할 수 없고, 적법한 인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하나의 사례가 ‘창가학회초상사진사건’이다.⁶³⁾ 이것은 종교법인의 명예회장 사진을 사용하여 하나는 사진 그대로 다른 하나는 사진의 윤곽을 복사하여 각각 적절치 않은 말풍선을 넣은 사건이다. 이것에 대하여 사진가측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서 재판소는 우선 윤곽만을 넣고 말풍선을 부가한 사진에서는 저작물의 본질적 특징은 재현되고 있지 않은 점에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였다. 한편 사진까지 전부 사용하고 말풍선을 넣은 것에 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하고, 인용에 해당하는가의 판단에 있어서는 이것은 정당한 범위 내라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고등법원에서도 지방법원의 판결과

62) 東京地判 平成13年(2001年)6月1日 判時1757号138頁; 東京高判 平成14年(2002年)4月11日平成13(ネ)3677

63) 東京地判 平成15年(2003年)2月26日 判時1826号117頁; 東京高判 平成16年(2004年)11月29日平成15年(ネ)1464号

동일하게, 전자에 대해서는 복제 또는 번안⁶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후자에 대해서도 위에서 언급한 다른 판결들의 요건사실에 부합하는가를 판단하지 않았다. 반면 고등법원은 공정한 관행과 정당한 목적의 범위 내에 해당하는가 하는 구조로 판단하여 결국 제32조 제1항의 해당성을 부정하고 저작권 침해를 긍정하였다.

4. 인용 가이드라인의 예

공정한 인용에 해당되는지의 궁극적인 판단은 법원에 맡겨져 있으나, 저작권 침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저작권자들의 권리도 보장하며 OER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용 가이드라인을 만든 예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고, 해외에서도 아직까지 인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분야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인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우리나라 OER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에 앞서 각국에 알려진 중요한 몇몇 가이드라인을 예로 들어 보겠다.

가. 미국의 ‘교실 가이드라인’

미국에서도 비록 교실 내에서의 인용에 대해서이긴 하나 일찍이 저작자, 출판자, 교육전문가 등의 관련 당사자 대표들이 만든 ‘교실 가이드라인’⁶⁵⁾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이 가이드라인은 법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저작물의 이용자와 창작자간의 타협의 산물로서 공정이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가이드라인은 어문, 음악, 시청각저작물의

64) 외국 문학작품의 줄거리나 사건은 그대로 두고, 인물·장소·풍속 등을 자국의 것으로 바꾸어 개작하는 일.

65) Agreement on Guidelines for Classroom Copying in Not-for-Profit Educational Institutions WITH RESPECT TO BOOKS AND PERIODICALS.

이용에 관한 안전장치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책이나 정기간행물과 관련하여 이 가이드라인은 교사가 학문적인 연구, 강의 및 강의준비를 하기 위하여 책이나 정기간행물로부터 일정 부분(예컨대 책의 한 장, 정기간행물의 하나의 논문)에 대하여 하나의 복제물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 부수의 숫자가 학생 숫자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여러 부의 복제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물론 이 경우에는 (i) 간결성(brevity, 예컨대 시의 경우 250 단어가 넘지 않거나 2쪽 이내에 인쇄되어 있다면 시 전체 부분을 복제할 수 있으나, 이보다 긴 시라면 250 단어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발췌할 수 있음), (ii) 자발성(spontaneity, 교사 자신의 생각에 따라 복제가 이루어지고, 복제물을 이용하기로 하는 순간과 서로 시간적으로 매우 밀접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대하여 시간적으로 적합한 응답을 기대하는 것이 불합리할 것), (iii) 누적효과(cumulative effect, 저작물의 복제가 한 강좌를 위하여 행하여져야 함 : 동일한 저작자로부터 1부의 단편 시나 논문 등이 복제될 수 있고, 동일한 집합저작물이나 정기간행물로부터 한 학기에 3부의 시나 논문 등이 복제될 수 있음 :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이 한학기의 한 강좌에서 아홉 번을 초과해서는 안 됨)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각 부수의 복제물에는 저작권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미국의 수업 목적 복사 가이드라인

- 교사를 위한 1부의 복제 : 수업 또는 수업 준비를 위해 교사가 직접 또는 요청을 하여 다음의 것을 1부 복제할 수 있다. 그것은 책의 한 장(章), 정기간행물의 하나의 논문, 편집물에 게재된 하나의 단편이나 시, 책에 게재된 하나의 차트, 만화 등이다.
- 수업 과정을 위한 여러 부의 복제 : 어떤 경우에도 학생당 1부를 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간결성 기준과 자발성 기준 그리고 누적효과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전제하에 교사가 직접 복제할 수 있다.

간결성 기준

- 250단어 또는 2페이지를 넘지 않는 시의 경우 : 전부
- 250단어 또는 2페이지를 넘는 시의 경우 : 250단어 이내
- 2,500단어를 넘지 않는 산문의 경우 : 전부 또는 1,000단어 또는 전체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초록

둘째,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은 연주 이외에 학문 목적으로 음악저작물의 발췌부분에 대하여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이 경우에는 각 학생에 대하여 한 부만이 복제되어야 하고 발췌부분이 연주를 할 수 있는 단위인 ‘악절이나 악장’을 구성하는 전체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어느 것이나 전체 저작물의 1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과 역시 같은 목적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단위(예컨대 악절이나 악장)전체를 복제하는 것, 그리고 긴급한 경우에 여러 부를 복제하는 것(긴급한 복제는 이미 구입한 복제물이 당장 연주를 하기 위하여 이용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과 연습이나 평가 또는 시험을 위하여 한 부 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셋째, 시청각저작물(audiovisual works)을 비영리 교육기관에 의하여 녹화되는 것이 어문·음악저작물의 이용에서와 같이 공정이용이 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1982년에 인정되었다. 이에 의하면 TV방송국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요금을 과하지 않고 전송되는 프로그램에 관하여 비영리 교육기관이 녹화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경우 녹화된 것은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고, 이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녹화한 것은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그리고 녹화물을 다시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가하여진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비록 연방 저작권법에 성문법으로 입법되지 않고 입법역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날 성문법의 내용과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자(도서관, 학교, 연구자 등의 집단)간의 타협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 일본 교토대학의 ‘OCW 가이드라인’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도 OCW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하여 인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컨대 일본 교토대학의 경우에도 “설령 일본 저작권법 제35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제32조에서 ‘적법인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이 조문에 의하면 강의자료 중에 타인의 문헌을 게재하여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행위에 있어서도 ① 타인의 문헌이 이미 공표된 것일 것, ② 자기의 문장과 타인의 문헌이 명료하게 구별될 수 있을 것, ③ 타인의 문헌의 출전이 명시되고 있을 것, ④ 자기의 문장이 ‘주(主)’이고, 타인의 문헌이 ‘종(從)’이라는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 침해로는 되지 않고 적법하게 됩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강의를 공개하는 교수자가 스스로 주의하도록 하고 있다.⁶⁶⁾

1. ‘인용되고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이 이미 공표된 것인가?
 - 미공표된 편지, 일기, 논문은 불가
2. ‘인용되고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이, ‘인용하고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과 명료하게 구별되는가?
 - 어문저작물(논문 등)을 인용하는 경우
 - 괄호로 묶거나 폰트 변경 등을 할 필요가 있음
 - 도표, 사진, 그림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 인용마다 각주로 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3. ‘인용되고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에 제호나 저작자 등의 ‘출처의 명시’를 하고 있는가?
 - 일반적으로 제호, 저작자 명을 표시하는 것이 원칙임
 - 출판물의 경우에는 출판사명 또는 게재잡지명, 저작물이 수록되고 있는 판, 권호 등의 표시를 함

66) <http://ocw.kyoto-u.ac.jp/jp/copyright/copyright09.htm>

4.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이 주(主), ‘인용되고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이 종(從)의 관계가 있는가?
- 구체적으로는 다음 (1) 내지 (3)과 같음
 - (1) 강의를 위하여 그 인용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인용 목적과 필요성)
 - 필요성이 없는데도 ‘참고정도로 끌어온 것’뿐이거나, ‘인용되어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설령 그림이나 사진 등)을 감상한다고 하는 목적의 경우에는 불가함
 - (2) 인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이상의 분량은 아닌가?
 - ‘인용되어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이, ‘인용하여 이용하는 측’의 저작물보다도 게재 공간이 큰 경우에는 주종관계가 역전하고 있다고 평가될 가능성이 높음
 - (3) ‘인용되어 이용되는 측’의 저작물의 일부를 마음대로 개변·삭제하고 있는가?
 - 인용의 모습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적법인용으로 되지 않음

다. MIT Press 출판물 인용 가이드라인

MIT Press에서는 자신의 출판물을 인용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공정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를 제시해본다.

The MIT Press Guideline for Fair Use of Our Publications

본 가이드라인은 The MIT Press의 출판물을 인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을 보호하면서도 학술출판물을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 저희의 출판물을 어떻게 인용하여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본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한다면 The MIT Press의 허가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The MIT Press의 출판물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본 가이드라인에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출판물 사용 유형

본 가이드라인은 아래와 같이 출판물을 학술적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유형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① 원저작물의 일부분에 대해서 비평이나 논평을 위해 인용한 것
- ② 저자의 논점에 대한 명확화나 지지의견을 덧붙이기 위해 또는 저자의 해당 논점이 이전의 연구결과와 관련된 것임을 밝히기 위해 원저작물을 인용한 것
- ③ 예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 예컨대 어떤 원리나 현상을 설명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 원저작물을 인용한 것

본 가이드라인은 어떤 종류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인쇄물에 대해서 공정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전자매체를 활용한 문서인지 또는 인쇄물이 전자문서로 변형된 문서인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예외사항에 대해서는 ‘3) 공정이용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유형(Types of Works Subject to Fair Use)’ 을 살펴보십시오).

2)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지 않는 출판물 사용 유형

아래와 같이 출판물을 사용하는 것은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정하지 않은 저작물 사용으로 간주됩니다.

- ① 여러 저자들이 논문을 기고해서 출간된 논문집이나 학위과정을 위해 관련 논문 등을 편집해서 담은 책자(coursepack), 인터넷 상에서 학위과정 등을 위해 논문을 공유하기 위한 사이트(e-reserve), 또는 특정 과목 수강생을 위해 개설된 웹 사이트(a course Web site)의 원저작물(Source Work)⁶⁷을 복제한 것
- ② Source Work가 인용되는 방식이 원고 내에서 병합된 것이 아니라 원고와 별도로(따로 ‘박스’ 처리해서) 전부나 일부를 그대로 차용하는 방

식으로 복제한 것

- ③ Source Work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저작물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나 홈페이지의 커버페이지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한 것
- ④ 각주 등을 통해 인용된 것임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않고 복제한 것
- ⑤ 표, 이미지, 일러스트레이션 등을 복제한 것

3) 공정이용이 적용되는 저작물의 유형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MIT Press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논문집, 책, 전자 출판물(CD 롬도 포함), 전자도서, 인터넷에서 작성된 저작물 등입니다.

<예외>

- ① The MIT Press가 다른 저자에게서 허락을 받고 출판한 출판물에 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자로부터 MIT Press가 사용 허락을 받은 이러한 출판물은 출처를 밝히는 크레딧 라인(Credit line : 출처표시선)이나, 각주, 참고문헌 리스트를 살펴보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② The MIT Press의 출판물이 외국어로 번역되어 출간된 경우, The MIT Press가 외국어 저작권을 갖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적용 여부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The MIT Press에 문의하시면 전자매체물이나 외국어 번역서에 대한 저작권이 저희에게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락처는 후술하는 '7) 허가 신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실 경우'를 참조) 문의 결과, The MIT Press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그 매체와 외국어 서적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4) 정량적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원저작물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저작물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해당 Source Work에서 인용한 부분이 모두 합쳐서 1,000 단어를 넘지 않아야 함
- ② 인용한 부분이 해당 Source Work 내용 전체 중 5%를 넘지 않아야 함

공정한 저작물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열거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어떤 책에서 원저작물을 인용을 할 때에는 원저작물에서 인용한 단어가 총 1,000 단어를 넘지 않으면서 동시에 인용된 단어들은 원저작물의 5%를 넘지 않는 분량이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기술한

2) 본 가이드라인에서 인정하지 않는 출판물 사용 유형 부분도 참고하기 바랍니다. 본문과 분리되어 ‘박스’ 로 삽입된 인용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량적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더라도 공정한 사용이 될 수 없습니다.

5) 정성적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공정한 저작물 사용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① 원저작물을 인용하는 저자는 인용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나 **Chicago Manual of Style**의 15차 개정판(6장과 10장 참고)에서 제시하는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② 인용 부분에서 일부 생략은 할 수 있지만 원저작물의 본래 의미가 변경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③ 학계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원저작물의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6) 사용자에게 “하향 전달되는” (downstream) 저작권

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원저작물을 사용하면, 사용하는 글 내에 인용된 원저작물에 대해 다른 제3자에게 그 부분의 인용을 허락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7) 허가 신청이나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위의 가이드라인 부분에 대해 질문사항이 있거나 The MIT Press의 출판물을 복제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려면 저자, 제목, 복제하고자 하는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질문내용을 정리해서 Permission Department, 55 Hayward Street Cambridge, MA 02142로 우편물을 보내주시거나 fax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17-253-1709). 저희가 10일 안에 회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 Wikipedia 인용 가이드라인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⁶⁸⁾에서는 저작물 인용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참여자의 주의를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 위키피디아에는 아직 인용 가이드라인이 없으나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가이드라인을 만든 바 있다.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언어저작물을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에서 인용하는 경우에 지켜야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다.

Wikipedia : 인용 가이드라인/초안

1) 머리말

(1) 집필은 자신의 문장으로

67) 어떤 매체를 통해서든 MIT Press의 이름으로 출판된 모든 출판물은 본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는데, 예를 들어 논문집, 책, 전자 출판물(CD 롬도 포함), 전자도서, 인터넷에서 작성된 저작물을 말함

68) 누구나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사용자 참여의 온라인 백과사전으로서 2001년 1월 15일 시작되었다. 비영리 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이 운영하며 설립자는 지미 웨일스(Jimmy Wales)이다.

백과사전을 집필하는데 누군가가 작성한 문장 등을 그대로 또는 조금만
개변하여 사용하여야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집필에
있어서는 복수의 신뢰할 수 있는 검증 가능한 자료를 참조하고, 그 내용에
기초하여 기술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키피디아에서는 그 자료를 베끼
지 말고, 당신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하고 음미하여 백과사전에 어울
리는 당신 자신의 표현으로 집필할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집필하면 저작권법 등에 위반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작권 침해
를 피하는 데에는 당신 자신의 표현으로 집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
니다.

(2) 인용의 의의

그러나 반드시 누군가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거론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사 본문만이 아니라 노트에서의 논의 등에 대해서도 실제 기
술한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인용’을 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에서는 위키피디아에서의 인용 취급 방법과 저작권법상의 적절한 인용 방
법을 해설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피하려는 관점을 고려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인용’의
기초로 되는 문장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인 경우에
한정하여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치 등의 데이터나 사실 등과 같은 저
작물이 아닌 것, 보호기간을 지난 저작물이라도 이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위키피디아는 백과사전이고 ‘검증가능성’이
라는 방침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요구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누군가의 저작권을 절대로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서를 이해한 후 집필함으로써, 침해
할 가능성은 꽤 감소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아도 권
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저작권법을
이해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는 기술을 함으로써 보다 좋은 기사가
가능하면 이 문서에 따르지 않는 기술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누
군가가 삭제 의뢰를 하거나 기사 노트에서 설명을 요구할지도 모릅니다. 그

러한 경우에는 판례나 신뢰할 수 있는 해설서의 기술을 표시하면서 정성스럽게 설명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2) 고려할만한 방침과 법률

(1) 위키피디아 재단의 방침

위키피디아 재단은 위키피디아를 포함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있어서의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자유사용이 허락되지 않은(이하 ‘저작권 대상’이라고 한다) 콘텐츠의 취급에 대하여 2007년 3월 27일 이사회 결의(이하 ‘이사회 결의’라 한다)에 의하여 공식 견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가 받아들이는 콘텐츠는 자유사용 라이선스 하에서 이용하여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한편, 일정한 요건을 갖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저작권 대상 콘텐츠를 받아들이는 것을 용인하였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화상 이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고려되나, 화상을 이용하는 경우와 텍스트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저작권법상의 취급이 원칙적으로 다른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 대상 텍스트의 인용방침도 이사회 결의에 준거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일본의 저작권법

타인의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번안하거나, 또는 네트워크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전재(轉載), 즉 누군가가 쓴 문장을 일부라도 그대로 위키피디아에 베껴 쓰거나 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에 해당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작품에의 비평 등 도저히 그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을 인용하여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제32조

1항 :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인용할 수 있는 것의 근거로 되는 기본적 규정

· 제43조

2호 : 제32조 1항의 인용을 하는 경우에는 번역하여 인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 제48조

1항 1호 : 제32조 1항에 따라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2항 : 출처를 명시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규정

3항 :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도 원저작물의 출처명시를 필요로 하는 규정

(3) 미국의 저작권법

미국의 저작권법(17 U.S.C)에는, 일본의 저작권법 제32조 1항과 같이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않은 인용을 인정하는 개별적·구체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인용하는 데에는 포괄적 권리 제한 규정인 제107조에 기초하여 공정하다고 인정되는 방법(Fair Use)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제107조에 의하면 그 인용이 공정이용으로 되는지 여부는 적어도 이하의 4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i. 사용목적 및 성질(사용이 상업성을 가지는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 인가를 포함)
- ii.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성질
- iii. 저작권 있는 저작물 전체와의 관련에 있어서의 사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 iv. 저작권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대한 사용의 영향

3) 인용 방침

(1) 용어의 정의

본 방침에 있어서의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 ‘기사본문’이란, 위키피디아 일본어판 기사(제목란 이외의 문서, 이용자 사이의 대화문 등을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로써, 투고자의 창작에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 ‘인용’이란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의 기사를 부연 설명하거나 또는 그 예증,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투고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기사 일부에 채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 ‘피인용문’이란 실제로 인용되어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 ‘피인용저작물’이란 인용의 기초로 된 저작물으로써 피인용문을 포함하고 있던 저작물 전체를 말합니다.

(2) 본 방침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

본 방침에 따라 인용하여야만 하는 저작물은 이하의 두 가지의 요소를 갖춘 것입니다.

① 일본 또는 미국의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언어의 저작물일 것

② GFDL⁶⁹⁾(GFDL과 상호성을 가진 라이선스를 포함한다) 하에서의 이용이 허락되어 있지 않은 것

다만 ‘언어저작물’에는 소스코드(프로그램저작물), 아스키 아트(도형 저작물 또는 미술저작물) 등, 문자 조합에 의하여 표현되는 다른 저작물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위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저작물, 예컨대 다음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본 방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 미일 저작권법 하에서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

물성을 갖지 않은 소재를 포함한다)

- GFDL에서 이용이 허락된 저작물
- 언어저작물이 아닌 저작물

(3) 인용의 요건

‘본 방침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을 인용할 때에는 이하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일 것 : 피인용문이 공표되어 있을 것

공표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저작자의 뜻에 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하여, 이하 ‘미공표저작물’이라 한다)을 인용할 수는 없습니다(저작권법 제32조 제1항). 미공표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 당해 저작물의 저작권이나 저작인격권(공표권, 저작권법 제18조)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나 기업이 보유하는 기밀정보의 누설, 개인 프라이버시의 침해라고 하는 다른 중대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미공표 저작물은 검증 가능성을 결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 아니기 때문에 미공표저작물의 인용은 위키피디아의 집필방침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됩니다.

예컨대 서한집 등에 실리지 않은 편지, 미발표 논문, 미공개 소스코드 등을 인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필연성 : 인용할 필연성이 있을 것

저작물 인용에 있어서 그 필연성이 요구된다고 한 재판례는 없습니다. 한편 필연성을 요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례는 있습니다.⁷⁰⁾ 그러나 필연성을 요구하는 학설이 매우 강하고, 실무상으로도 채용례가 많은 점 및 저작권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영상을 집어넣는데 그 필요성과 비대체성을 요구하는 이사회결의 3의 취지를 고려하여 본 방침에 있어서도 필연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인용의 필연성이 있는 경우란 이사회 결의 3을 준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 (필요성) 피인용문의 존재가 설명사항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현저히 용

이하에 하고, 역으로 피인용문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이해가 곤란하게 됩니다.

· (비대체성) 피인용문을 ‘본방침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은 저작물(자유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로 바꾸는 것으로는 인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③ 일부일 것 : 피인용문은 원칙적으로 피인용저작물의 일부일 것

피인용저작물에 있어서의 피인용문의 비율은 인용목적상 정당한 범위내로 한정되어야만 합니다. 인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문언을 피인용저작물로부터 발췌하여 인용하여 주십시오. 예외적으로 전부를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시나 단가 등 매우 짧은 저작물에 한정됩니다.

④ 주종관계 : 기사 본문이 주, 피인용문이 종의 관계에 있을 것

기사본문이 ‘주’, 피인용문이 ‘종’의 관계가 성립하여야 합니다. 주종관계가 요구되는 이유로써, i)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의 요건으로써, 주종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상으로도 강하게 지지되고 있는 점, ii) 자유사용 콘텐츠를 창작하고 제공한다고 하는 위키피디아 프로젝트의 목적을 고려하면 자유롭지 않은 콘텐츠가 주체성을 발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점이라는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주종관계란, 자신의 창작에 의한 기사 본문이 주체성을 가지고 피인용문이 기사 본문의 내용을 보충설명하거나 또는 그 예증,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등 기사 본문에 대하여 피인용문이 부종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관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케이스는 피인용문이 주체성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전형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i) 피인용문에 주석을 붙이는 것과 같은 형태로 피인용문이 이용되는 경우

ii) 기사본문이 독립하여 저작물로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

⑤ 명료구별성 : 기사본문과 피인용문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을 것

기사본문과 피인용문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명료구별성이 요구되는 이유로써, i) 저작권법 제32조 제1항의 인용의 요건으로써, 명료구별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학설도 강하게 지지하고 있는 점, ii) 기사 본문과 피인용문이 명료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경우, 피인용문의 이용까지도 GFDL에서 허락되고 있는 것으로 오인되고,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자에게 불측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점이라는 두 가지가 거론됩니다.

기사본문과 피인용문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인용문을 「 」 『 』 등의 꺾쇠표시, 줄 내림, 구분방법 등을 사용하여 명확화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인용문 템플릿도 준비되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명료하게 구별할 수 있다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⑥ 동일성 : 원칙적으로 피인용문을 개변하지 않을 것

피인용문은 원칙적으로 일체의 개변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저작물의 개변은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20조 제1항)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인용하는 경우도 동일(저작권법 제50조)하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보아서 피인용 저작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고 판단하여 인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변할 필요성은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구두점, 줄바꾸기 등의 변경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인용문 중에 ‘외국’, ‘우리나라’, ‘내일’ 등, 위키피디아 일본 중심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데 반하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도 동일합니다.

다만 피인용문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쓰여져 있는 경우에는 일본어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은 인정됩니다(저작권법 제43조 2호). 번역하여 인용하는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도록 힘써 주십시오. 요약에 의한 인용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피할만한 것으로 합니다. 물론 저작권법상의 요약에 해당하지 않는 정리의문의 투고는 본 방침의 대상이 아닙니다.

⑦ 출처표시 : 피인용문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을 것

피인용문의 출처명시는 저작권법상의 의무이기도 하나(저작권법 제19조 1항, 제48조 1항 1호), 출전을 명기하고 검증가능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위키피디아 집필방침상으로도 필요합니다.

출처로써 저자명, 작품의 제호, 서적 타이틀이나 잡지명과 권호, 페이지, 출판사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웹페이지라면 저자, 제호, URL, 열람일을, TV프로그램 등이라면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번역문을 인용하는 것이라면 원저작자명과 번역자명의 양쪽을 기재하여야만 합니다(저작권법 제19조 1항). 출처는 괄호, 각주 등을 이용하여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인용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① 삭제에 의한 대응

‘본방침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이 ‘인용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투고된 경우, 원칙적으로 투고된 텍스트는 삭제대상으로 됩니다. 본 방침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투고를 발견한다면 삭제의뢰를 해 주십시오. 또한 그 기사의 노트 페이지나 그 투고를 한 이용자의 회화 페이지 등으로 본방침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그 이후 적절한 인용 형식을 갖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사 중 어느 부분이 어디부터의 전재인가를 그 기사 노트페이지 또는 위키피디아 저작권 문제 조사 의뢰에서 지적하여 주십시오.

② 편집에 의한 대응

‘인용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라도 위반상태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삭제가 아니라 편집에 의한 수정(피인용문의 제거를 포함한다)도 검토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집에 의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1) 피인용문이 저작물성을 갖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하여 인용 요건을 갖

추지 않고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

2) 피인용저작물이 공개하여 행해진 정치상의 연설 또는 진술 및 재판절차(행정청이 하는 심판 기타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포함한다)에 있어서의 공개 진술(일본의 저작권법 제40조 1항의 대상으로 되는 저작물)로써 인용요건 5를 갖추고 있는 경우

③ 독자적 방침의 효력

위키 프로젝트마다, 또는 기사마다 본방침에 위반하지 않을(본방침에 위반하는 인용을 용인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인용에 관한 독자적 방침을 두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한 규칙에 위반하고 있으나 본방침에는 위반하지 않는 경우의 대처로써는 삭제가 아니라 편집에 의한 수정에 그쳐 주시기 바랍니다.

독자적 방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인용 가부는 본방침에 기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인용 요건 충족성 이외에 주의할만한 것

‘인용의 요건’을 갖춘 인용을 하는 경우라도 이하의 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주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그 기사 삭제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리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도 유의할만한 사항입니다.

· 복수의 피인용문을 조목별로 쓰는 형식으로 열거하는 것은 만약 인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피할만하다고 강하게 제안합니다. 다른 사용자에 의한 그 후의 편집에서 피인용문이 여기에 추가되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태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 ‘가사’ 처럼 상업 목적으로 창작되어, 유상으로 이용허락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비교적 짧은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여야만 합니다. 인용의 요건의 충족성에 대하여 적어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투고를 하지 않을 것을 권장합니다.

- 피인용저작물의 권리가 적법한 인용의 요건에 대한 견해를 독자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견해도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와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는 것은 분쟁방지의 수단으로써 대단히 유효합니다.

5. 해외 저작권 동향으로부터의 시사

가. 외국 저작권법과의 비교 요약

저작권법상 OER에 대하여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제25조를 적용하기 어려움을 앞에서 살펴보았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의 이용형태에 대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OER이 크게 위축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저작권 규정이 ‘인용’이고 각국에서도 이 인용과 관련한 조문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인용 관련 조문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9) GFDL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GNU Free Documentation License, GNU FDL, GFDL)의 약자로서, CCL과 유사한 일종의 자유문서를 위한 저작권 라이선스의 한 형태이다. GFDL은 자유 소프트웨어 및 GPL로 유명한 FSF에서 제공하는 규약으로써, CCL보다 규약을 더 엄격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지만 그 만큼 저작권자가 세세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특징이 있다. GFDL은 기본적으로 영리, 비영리에 관계없이 수정판(2차 저작물)의 작성을 허가하고, 그렇게 작성된 수정판도 GFDL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70) 東京高判 昭和60年(1985年)10月17日(레오나르드 후지타)에서는 “인용에 필연성이 있는가는 저작물이 저작자의 자유로운 정신적 활동의 소산인 것으로부터 한다면 아마도 저작자의 주관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고, 이것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채용하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결론에 도달할 우려가 있어서 상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국가	저작권법상의 규정
한국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미국	[제107조] 비평, 논평, 시사보도, 수업,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저작권 있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 제작 또는 기타 제106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공정이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체적인 경우 저작물의 이용이 공정이용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저작물 이용이 상업인지 여부 또는 비영리적 교육목적인지 여부를 포함한 그 이용의 목적과 성격 (2) 원저작물의 성질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분량과 실재성 (4) 이용이 원저작물의 잠재적 시장 또는 가치에 주는 영향
독일	[제51조] 그 이용이 특정한 목적에서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한, 공표된 저작물을 그 인용을 목적으로 복제, 배포 및 공공에 재생할 수 있다.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된다. 1. 각각의 저작물을 그 공표 후 독립한 학술저작물에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수록하는 경우 2. 저작물 부분을 그 공표 후 독립한 언어저작물에 인용하는 경우 3. 발행된 음악저작물의 각각의 부분을 독립한 음악저작물에서 인용하는 경우
일본	[제32조] ① 공표된 저작물은 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인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하고 또한 보도, 비평, 연구 기타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한다.

주요국의 동향과 저작권 규정 비교표로부터 알 수 있는 바는 우리 저작권법 제28조가 일반규정 형식을 취하고 있어서 최근의 해외 동향을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제28조에 미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이 예시되어 있어서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이 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본래 독일 및 일본은 수업목적에 대해서 저작물 자유이용이 허락됨을 별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국에서는 제107조 공정이용으로 해결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독일 및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로 수업목적과 관련하여 제25조에서 자유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제28조에서 교육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주요국의 상황을 살펴보았으나, 물론 각 국가의 규정체계가 다소 다르고 사회상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외국의 판례와 학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러나 외국의 축적된 판례와 학설들은 아직 사건이 많이 축적되지 않은 우리의 상황에서 인용과 관련한 법해석상 많은 참고가 될 만하다.

V. OER 활용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안)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국에서는 관련 분야에서 인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도 특히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은 OER관련 분야에서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바람직한 저작물 인용 관행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에 있어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저작권 문제는 국내 저작물 인용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이러한 각국의 저작권법 해석론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국내 저작권법 해석론과 주요국의 해석론을 참고해보면, 저작권 침해요소로서 다음과 같은 8가지 요건을 중시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1. 저작물 인용요건

	요건	내용
1	저작물 이용의 필요성	인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2	주종관계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것인지 여부
3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	인용에 의하여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4	인용된 분량과 인용된 부분의 중요도	양적 또는 질적으로 판단하여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인지 여부
5	원저작물의 성질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저작물인지 예술작품인지 여부
6	동일성 유지	인용되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는지 여부
7	인용의 목적	영리적 목적인지 비영리적 목적인지 여부(인용의 허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8	구별용이성과 출처표시	인용된 저작물의 구별이 용이하며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본 연구에서는 위의 사항을 요건으로 제시하면서 대표적인 사례에서 위의 각 요건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안)을 [부록 1]에 제시하였다. 이를 참고로 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이 합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올바른 저작권 인용 관행이 정착되기를 기대해 본다.

2. 인용시 유의사항

저작물을 인용할 시에 위에서 제시한 인용요건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권리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주의하여야 한다. 상업목적으로 창작된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의 요건의 충족성에 관해 의심이 가는 경우,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자가 적절한 인용의 요건에 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경우,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저작물을 인용할 시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의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그 인용 가능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저작물 인용요건에 따른 9단계의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그 내용은 ① 인용된 저작물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가, ② 이러닝 콘텐츠가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것인가, ③ 인용된 부분은 필요최소한의 부분에 그치는가, ④ 인용된 부분을 임의로 변경하지는 않았는가, ⑤ 콘텐츠가 비영리적인 목적으로만 활용되는가, ⑥ 이러닝 콘텐츠에서 인용된 부분이 명료하게 구별 가능한가, ⑦ 공표된 저작물인가, ⑧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수요에 영향을 안주는가, ⑨ 출처표시를 하였는가 등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용자들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에 앞서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모두 통과할 경우에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타인의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각 단계별 체크리스트 중 어느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으므로 인용시 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VI. 결론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저작물은 무에서 창조되기보다는 선인의 공적을 기초로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저작권이 보호되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용을 허용하고,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인용에 관한 제28조의 취지이다. 이 의미에서 인용은 저작권법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로써,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이 조문을 해석해 내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저작권법 제28조는 일반규정으로써 각 사례마다 정당한 범위 내인가 아닌가의 여부 및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저작권법 제28조는 인용의 성립요건으로써, ① 공표된 저작물을, ②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③ 정당한 범위 안에서, ④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라는 4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건들은 매우 추상적이어서 법문만으로는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다. 더구나 아직 판례와 이론이 축적되지 않아 분명하고 명확한 해석기준이나 적용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인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인용된 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인용에 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여,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문화발전이라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실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조항의 탄력적 해석을 통한 구체적 타당성이라고 하는 장점을 살리면서도 사전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몇몇 중요한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가이드라인 등의 제시가 필요하다. 해외의 저작권과 관련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있는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 판례의 입장과 주요국의 상황을 기초로 정당한 인용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의할만한 점은, ① 저작물 이용의 필요성, ② 주종관계 ③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 ④ 인용된 분량 및 인용된 부분의 저작물에서의 중요도 ⑤ 원저작물의 성질, ⑥ 동일성 유지, ⑦ 인용의 목적(특히 각 저작물이 상업적 이용인지 여부), ⑧ 구별용이성과 출처표시 등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각각의 점을 고려하여 추상적 규정인 제28조를 위의 요소들로써 구체화하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인용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여 문화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점이다. 저작권 보호와 문화발전이라는 충돌되는 양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적법한 인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예컨대 저작물 이용을 통하여 교육발전이 크게 신장되는 반면 저작권자의 침해되는 이익은 미비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적법한 인용으로써 허락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많은 판례에서도 이러한 취지를 나타내어 왔는데, 문화발전과 저작권 보호의 조화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향후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교육계, 문화계 등 각각 관련 단체 등이 머리를 맞대어 통일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관행이 확립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문화관광부, 「인용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저작권의 보호와 활용을 위하여」 2005. 12.
- 오승중,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07.
- 이형하, “저작권법상의 자유이용”, 「지적소유권에 관한 제문제(하)」, 재판자료 57집, 법원행정처, 1992.
- 하용득, 「저작권법」, 사단법인 법령편찬보급회, 1988.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8 대학정보와 최신 동향 분석 자료집」, 2008.
- 허희성, 「신저작권법 축조개설」, 명문프리컴, 2007.

[미국문헌]

- Cleborne D. Maddux, Developing Online Courses: Ten Myths, 23 RURAL SPECIAL EDUC. Q. 27(2004)
- Gary Wyatt, Satisfaction, Academic Rigor and Interaction: Perceptions of Online Instruction, 125 EDUC. 460(2005).
- Jeremy Kudon, Form over Fuction: Expanding the Transformative Use Test for Fair Use, 80 B. U. L. Rev. 579, 606 (2000).
- JOHN VAUGHN ET. AL., ASS'N OF AM. UNIVS., Campus Copyright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 Basic Guide to Policy Considerations (2005).
- Kate Irwin, Copyright Law—Librarians Who TEACH: Expanding the Distance Education Rights of Libraries by Applying the Technology Education and Copyright Harmonization Act of 2002., 29 W. New Eng. L. Rev. 875 (2007).
- Pierre N. Leval, 103 Harv. L. Rev. 1105, 1111(1990).

Sean Smith, The Positive and Challenging Aspects of Learning Online and in Traditional Face-to-Face Classrooms: A Student Perspective, 20 J. OF SPECIAL EDUC. TECH. 52(2005).

Simon Marginson, Don't Leave Me Hanging on the Anglophone: The Potential for Online Distance Higher Educ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58 HIGHER EDUC. Q. 74(2004).

[독일문헌]

Artur-Axel Wandtke/Winfried Bullinger, Praxiskommentar zum Urheberrecht, 3. Aufl. C. H. Beck, 2009.

Gerhard Schricker, Urheberrecht, Kommentar 3. neubearbeitete Aufl. C. H. Beck, 2006.

[일본문헌]

디지털콘텐츠위원회 「著作権法における「引用」について」知財管理 58卷5号 (2008).

飯村敏明 「裁判例における引用の基準について」著作権研究26号(2000年).

上野達弘 「引用をめぐる要件論の再構成」『著作権法と民法の現代的課題』(『半田正夫先生古稀記念論集』法学書院(2003年)).

田村善之 「著作権法32条1項の「引用」法理の現代的意義」コピーライト 47(554)号 (2007年).

참 조 판 례

[국내판례]

대법원 1990. 10. 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도2227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779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4. 선고 93나47372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1279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7. 9. 7. 선고, 96나1862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10. 11. 선고 2006노930 판결.
서울남부지법 2008.6.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서울민사지법 1992. 6. 5. 91가합395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18.자 2004카합344 결정

[미국판례]

Feist Pub'ns, Inc. v. Rural Tel. Serv., Co., 499 U.S. 340, 352-56 (1991).
Field v. Goole, Inc., 412 F. Supp. 2d 1106, 1122(D. Nev. 2006).
Macmillan v. King, 223 F. 862, 867 (D. Mass. 1914).
MCA, Inc. v. Wilson, 677 F. 2d. 180, 183 (2nd Cir. 1981).
Perfect 10, Inc. v. Amazon. com, Inc./Google, Inc., 487 F. 3d 701,
721(9th Cir. 2007).
Sega Enterprises Ltd v. Accolade, Inc., 977 F. 2d 1510, 1526 (9th Cir.
1992).
Sony Corp. of America v. Universal City Studios, Inc. 464 U.S. 417,
496(1984).

[독일판례]

BGH 23. 5. 1985, GRUR 1986, 59
BGH 4. 12. 1986, BGHZ 99, 162.
BGH, 3. 4. 1968, BGHZ 50, 147 - Kandinsky I
BGH, 3. 6. 1994, BGHZ 126, 313

[일본판례]

最判 昭和55年(1980년) 3月 28日 民集 34卷3号244頁.
東京高判 平成12年(2000年)10月17日 判時1724号124頁.
東京高判 平成14年(2002年)2月18日 判時1786号136頁.
東京高判 平成14年(2002年)4月11日平成13(ネ)3677
東京高判 平成16年(2004年)11月29日 平成15年(ネ)1464号)
東京地判 平成10年(1998年)10月30日 判時1674号132頁.
東京地判 平成10年(1998年)2月20日 知的裁集30卷1号33頁
東京地判 平成11年(1999年)10月27日 判時1701号157頁
東京地判 平成11年(1999年)8月31日 判時1702号145頁
東京地判 平成12年(2000年)2月29日 判時1715号76頁.
東京地判 平成13年(2001年)6月1日 判時1757号138頁
東京地判 平成15年(2003年)2月26日 判時1826号117頁

Abstract

A Study on the Copyright Fair-Use for Online Distance Education

Tae-Young Yoon

Rapid growth of IT industry has offered a variety of tools for teaching methodology at classroom, so multimedia and internet became essential in education. However, it has also left an important issue to solve, which is the protection of copyright. Though Copyright Law allows fair use that meets the legitimate practices for the purpose of news, criticism, education, and research, this statute itself does not provide practical guideline because of its nature of abstractness in defining fair use.

Therefore, establishing a guideline of fair use is an essential task for promoting the online learning and developing contents-sharing program between universities and schools.

With such purposes in mind, some developed countries have tried to build practical guidelines for classroom in order to encourage legitimate fair use of copyrighted materials.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ractical guideline that is appropriate to our educational environment by investigating theories, reviewing domestic cases and benchmarking current guidelines of other countries.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a platform in establishing useful and proper guideline for legitimate use of educational material in Korea.

[부록 1]

OER 활용에 있어서의 저작물 인용 가이드라인(안)

이하에서 제시되는 가이드라인은 국내는 물론 미국, 독일, 일본의 판례와 학설을 참조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인용의 기준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고 견해 차이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

교육기관은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자유롭게 복제하고 공연하거나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5조). 따라서 교수의 수업시간에만 사용되는 교육용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다른 저작물의 일부를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콘텐츠를 외부에 공개하여 이용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저작물 이용시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온라인 콘텐츠는 수업시간 외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저작권 침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적법 인용’규정에 해당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습니다. 제28조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 다른 저작물의 이용이 적법 인용에 해당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인용이란 자신의 의견 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신의 저작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은 논문과 같은 어문저

작물 만이 아니라 영화·동영상·그림·음악 등 여러 저작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되는 저작물은 공표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미공표된 편지, 영상, 음악 등은 이러닝 콘텐츠에 인용할 수 없습니다. 본래 인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지만 새로운 문화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요건에 따른다면 허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저작물을 적법하게 인용한 이러닝 콘텐츠가 OER로써 외부에 공개되더라도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습니다.

2. 저작물 인용요건

	요건	내용
1	저작물 이용의 필요성	인용되는 저작물의 이용이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2	주종관계	인용하는 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것인지 여부
3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	인용에 의하여 인용되는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는지 여부
4	인용된 분량과 인용된 부분의 중요도	양적 또는 질적으로 판단하여 인용의 목적상 정당한 범위내인지 여부
5	원저작물의 성질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저작물인지 예술작품인지 여부
6	동일성 유지	인용되는 저작물을 임의로 변경하는지 여부
7	인용의 목적	영리적 목적인지 비영리적 목적인지 여부(인용의 허용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8	구별용이성과 출처표시	인용된 저작물의 구별이 용이하며 출처를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

(1) 타인의 저작물의 이용이 필요한가?

피인용된 저작물이 있어야만 설명하는 내용에 대한 독자의 이해가 현재

하게 용이하게 되는 반면, 그 저작물을 인용하지 않으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야 합니다. 인용된 저작물 이외에 다른 저작물로 쉽게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인용목적 달성을 어렵습니다(비대체성). 인용된 저작물이 보충적 의미인지 단지 장식적인 의미인지 등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예컨대 미술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거나 음악 작품을 설명하면서 해당 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나, 이와 관계없이 강의 동영상 초기화면에 그림이나 음악을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 인용하여 이용하는 저작물이 주된 것이고, 인용되는 저작물이 종된 것인가?

주종관계는, 인용하는 저작물이 자신의 창작에 의한 내용으로 주체성을 가지는 반면 피인용된 저작물이 이에 대한 보충설명 또는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써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한 양적 판단뿐만 아니라 질적 판단도 중요합니다. 피인용된 저작물의 가치가 제작된 이러닝 콘텐츠보다 높은 존재가치를 가지는 경우에는 적법한 인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 예컨대 피인용된 저작물에 단순히 해설을 붙이는 것과 같은 형태만으로 콘텐츠가 제작되었다거나, 자신이 창작한 부분만으로는 독립하여 저작물로서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인용된 저작물의 잠재적 가치 및 시장에 주는 영향은?

인용한 저작물이 피인용된 저작물의 시장수요에 명백할 정도로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적법한 인용으로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러닝 콘텐츠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교실에서는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에게 미칠 잠재적 시장가치만 판단하면 되나 OER 등에서는 교육대상자가 광범위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예컨대 이러닝 콘텐츠로 인하여 인용된 저작물의 시장수요가 감소된 다거나 이러닝 콘텐츠의 수요 이유가 인용된 저작물 때문이라면 저작권 침해로 됩니다.

(4) 인용된 분량과 인용된 부분의 중요도는?

인용된 부분은 인용된 저작물의 일부이어야 하며 그 비율은 인용의 목적 상 정당한 범위 내에 그쳐야 합니다. 즉 인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을 피인용저작물로부터 추출하여 인용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허용된 분량이 단순히 사용 글자수나 사용 퍼센트와 같은 수학적 계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인용된 부분이 그 저작물의 가장 흥미있고 가치있는 부분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예컨대 짧은 단문이나 시, 미술작품 등은 성질상 전부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인용되는 부분이 10%를 넘는 경우 적법 인용으로 보기 어렵게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이 아닌데, 비록 방대한 분량의 저작물의 단지 일부만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한다면 적법한 이용으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저작물의 성질은?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작품인지, 예술 또는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작품인지도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인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인용되는 저작물이 정보전달을 위한 작품일 경우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작품인 경우 그 이용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 음악, 영화, 단편 소설 등과 달리 특정 정보나 사실을 전달하는 작품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도 널리 유포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그만큼 인용할 여지가 크게 됩니다.

(6)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인용된 저작물은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작물의 개변은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데, 저작물의 인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판례를 통해 볼 때,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의미는 인용되는 저작물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며, 만약 요약 정리한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피인용되는 저작물이 해외 저작물인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은 인정되는데, 다만 이 경우에는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인용의 목적이 영리적인가?

영리적 목적이 아니라 비영리적 교육목적을 위하여 다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적법 인용으로 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교육적 목적인다고 해서 다른 저작물의 이용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온라인 교육과정을 다른 대학에 팔려는 목적에서 이러닝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경우에는 영리적 성질이 있다고 보아 인용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8) 구별용이성과 출처표시는?

자신의 콘텐츠에서 피인용된 저작물이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여야 합니다

다. 괄호 등 특별한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명료하게 구별 가능하다면 방법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편 인용부분에는 각주 등 별도의 표시를 하여 인용 부분이 자신의 저작물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각 저작물의 자체기준에 따르되 적어도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어문저작물 : 저자명, 작품의 제호, 서적명 또는 잡지명과 권호, 출판사, 발행연도, 페이지
- 웹페이지 : 저자, 제호, URL, 열람일시 등
- 방송 프로그램 : 제작자, 작품명, 방송일시 등

3. 인용시 유의사항

위와 같은 인용의 요건에 따른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권리자와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이하의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영화나 대중가요와 같이 상업목적으로 창작되어 유상으로 이용허락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인용의 요건 충족성에 대하여 적어도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그 인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자가 CCL 등을 통하여 적법한 인용의 요건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는 경우에는 그 견해에 따라야 합니다.
- 피인용저작물의 권리자와 접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용의 취지를 설명하고 인용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자로부터 사전에 양해를 얻는 것이 분쟁방지를 위하여 좋습니다.

4. 인용 관련 사례

○ A 대학 갑 교수는 불법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음악을 사용하여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였다.

☞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로 됨

○ B 대학 을 교수는 학교 메인 홈페이지에 자신의 강의를 공개하면서 허락 없이 다른 교수의 논문과 책의 내용 중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짜집기하여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였다.

☞ 수업목적 범위 외에 해당하고 다른 저작물의 일부분만을 인용하여야 하는 요건에 위반하여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음

○ C 대학 병 교수는 자신의 이러닝 콘텐츠에 있어서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도입 부분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영상과 음악을 배경화면과 배경음악으로 하였다.

☞ 수업목적에서 벗어나므로 적법한 인용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만약 그 영상이나 음악이 50년(저작권 보호기간으로써 FTA에서 70년으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연장될 가능성 있음)이 지났다면 저작권 침해로 되지 않음

○ D 대학 정 교수는 다양한 애니메이션으로 구성된 강의를 OER로써 제공하고 있다.

☞ 인용의 필요성 요건에 어긋나므로 모든 애니메이션, 음악 등 저작물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됨

○ E 대학 무 교수는 홈페이지에 오픈한 강의 중간에 강의와 무관한 사진을 학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제시하고 있다.

☞ 인용의 필요성 요건에 어긋나므로 사진의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됨

○ F 대학 기 교수는 실험과 관련한 자신의 강의에 모 방송국의 다큐멘터리 실험 영상을 1분 정도 방영하면서(출처표시를 함) 자신의 실험을 전개하였다.

☞ 필요최소한도의 인용이고 정보전달을 위한 동영상으로써 적법한 인용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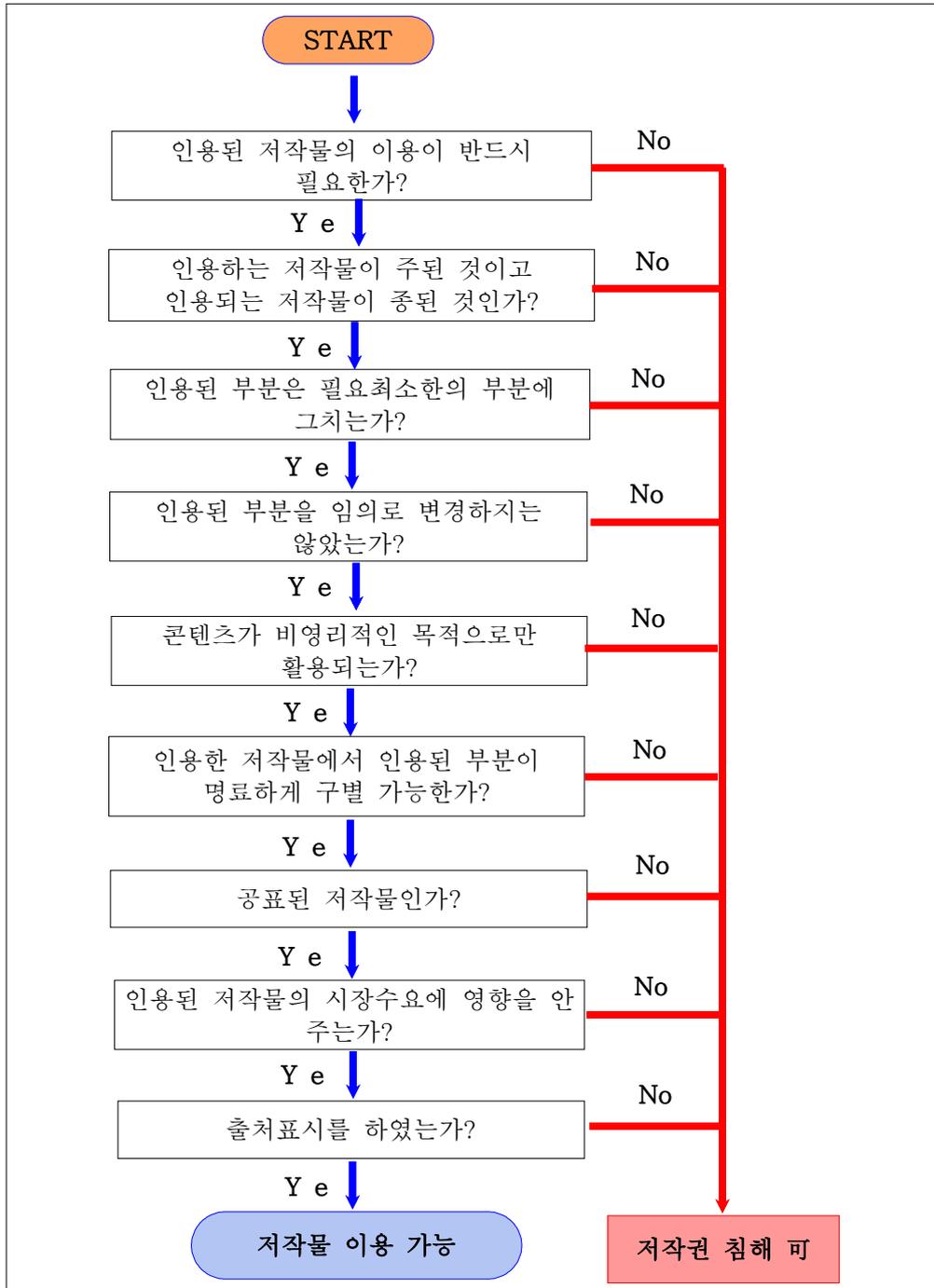
○ G 대학 경 교수는 프랑스어 회화 강의에 자주 쓰이는 표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프랑스 모 드라마의 해당 부분을 30초간 방영하면서 용례를 설명하였다.

☞ 주종관계의 요건에 비추어 적법한 인용으로 보임

○ H 대학 신 교수는 고흐의 작품세계에 관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면서 고흐의 대표작 몇 편을 사진으로 제공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 주종관계의 요건 및 필요성 요건에 비추어 적법한 인용으로 보임

5. 저작물 인용 체크리스트



[부록 2]

저작권법

[법률 제9625호, 2009.4.22,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하거나 저작물이 아닌 것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현하는 실연을 하는 자를 말하며, 실연을 지휘, 연출 또는 감독하는 자를 포함한다.
5. "음반"은 음(음성·음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음이 영상과 함께 고정된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음반제작자"는 음을 음반에 고정하는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9. "방송사업자"는 방송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0. "전송(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12.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디지털음성송신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3.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음의 수반여부는 가리지 아니한다)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4. "영상제작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5. "응용미술저작물"은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16.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라 한다)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한다.
17. "편집물"은 저작물이나 부호·문자·음·영상 그 밖의 형태의 자료(이하 "소재"라 한다)의 집합물을 말하며,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다.
18. "편집저작물"은 편집물로서 그 소재의 선택·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9. "데이터베이스"는 소재를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한 편집물로서 개별적으로 그 소재에 접근하거나 그 소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20.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이하 "갱신등"이라 한다)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한 자를 말한다.
21.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2.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26. "저작권신탁관리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를 신탁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업을 말하며, 저작물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저작권대리중개업"은 저작재산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가진 자를 위하여 그 권리의 이용에 관한 대리 또는 중개행위를 하는 업을 말한다.
28. "기술적보호조치"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나. 저작자·저작재산권자·출판권자·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30.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3. "인증"은 저작물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34.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과 다른 컴퓨터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코드를 복제 또는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저작권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 정책에 관한 사항
 2.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보호조치의 정책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 (저작물의 예시 등)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조 (편집저작물) ①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제2절 저작자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예명·아호·약칭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발행자·공연자 또는 공표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저작권) ① 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인격권"이라 한다)와 제16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이하 "저작재산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②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3절 저작인격권

제11조 (공표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제45조에 따른 양도, 제46조에 따른 이용허락, 제57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또는 제101조의6에 따른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저작자가 공표되지 아니한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이하 "미술저작물등"이라 한다)의 원본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원본의 전시방식에 의한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원저작자의 동의를 얻어 작성된 2차적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성명표시권)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동일성유지권)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제14조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①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일신에 전속한다.

② 저작자의 사망 후에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자가 생존하였다 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대표하여 행사하는 자의 대표권에 가하여진 제한이 있을 때에 그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17조 (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제19조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제20조 (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대여권) 제20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2조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들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그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다른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단체를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단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대한민국 내에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보상권리자"라 한다)로 구성된 단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보상금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그 구성원이 아니라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자를 위하여 그 권리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단체는 자기의 명의로 그 권리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진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2. 보상관계 업무규정을 위배한 때

3. 보상관계 업무를 상당한 기간 휴지하여 보상권리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⑧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는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미분배 보상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익목적에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⑨ 제5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과 취소 및 업무규정, 보상금 분배 공고,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목적 사용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기관이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6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

도를 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27조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또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관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도

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제32조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①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배포할 수 있다.

②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당해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녹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으로 복제·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①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하여 자체의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녹음일 또는 녹화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보존할 수 없다. 다만, 그 녹음물 또는 녹화물이 기록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보존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향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향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시를 하는 자 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 형태의 책자에 이를 복제하여 배포할 수 있다.
- ④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 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제36조 (번역 등에 의한 이용) ① 제25조·제29조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37조 (출처의 명시) ① 이 관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9조 내지 제32조 및 제34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2 (적용 제외)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제23조·제25조·제30조 및 제3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 관 각 조의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40조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제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3조 (계속적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① 제39조제1항 단서·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공표시기는 책·호 또는 회 등으로 공표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매책·매호 또는 매회 등의 공표 시로 하고,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완성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최종부분의 공표 시로 한다.

② 일부분씩 순차적으로 공표하여 전부를 완성하는 저작물의 계속되어야 할 부분이 최근의 공표시기부터 3년이 경과되어도 공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표된 맨 뒤의 부분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종부분으로 본다.

제44조 (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행사·소멸

제45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①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제47조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①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그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그 저작물의 이용에 따라 저작재산권자가 받을 금전 그 밖의 물건(출판권 및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설정의 대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한다.

② 질권의 목적으로 된 저작재산권은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한 저작재산권자가 이를 행사한다.

제48조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9조 (저작재산권의 소멸) 저작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2. 저작재산권자인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되어 그 권리가 「민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①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공표된 저작물(외국인의 저작물을 제외한다)의 저작재산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그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

한 보상금을 공탁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뜻과 승인연월일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재산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1조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공표된 저작물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방송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방송할 수 있다.

제52조 (판매용 음반의 제작)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다.

제6절 등록 및 인증

제53조 (저작권의 등록) ①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우에 한한다)·국적·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창작연월일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제54조 (권리변동 등의 등록·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5조 (등록의 절차 등) 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등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기재하여 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록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때
2. 등록 신청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한 등록에 대하여 등록공보를 발행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청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등록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 등록신청의 반려, 등록공보의 발행 또는 게시, 저작권등록부의 열람 및 사본의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2 (비밀유지의무)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 (권리자 등의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거래의 안전과 신뢰보호를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및 인증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7절 출판권

제57조 (출판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이하 "복제권자"라 한다)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이하 "출판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출판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가진다.

③ 복제권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출판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58조 (출판권자의 의무) ①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고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9월 이내에 이를 출판하여야 한다.

② 출판권자는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관행에 따라 그 저작물을 계속하여 출판하여야 한다.

③ 출판권자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각 출판물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여야 한다.

제59조 (저작물의 수정증감) ① 출판권자가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에 저작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증감할 수 있다.

② 출판권자는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다시 출판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0조 (출판권의 존속기간 등) ① 출판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 존속기간 중 그 출판권의 목적인 저작물의 저작자가 사망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자를 위하여 저작물을 전집 그 밖의 편집물에 수록하거나 전집 그 밖의 편집물의 일부인 저작물을 분리하여 이를 따로 출판할 수 있다.

제61조 (출판권의 소멸통고) ①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② 복제권자는 출판권자가 출판이 불가능하거나 출판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즉시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판권의 소멸을 통고한 경우에는 출판권자가 통고를 받은 때에 출판권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의 경우에 복제권자는 출판권자에 대하여 언제든지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출판을 중지함으로써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2조 (출판권 소멸 후의 출판물의 배포) 출판권이 그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에는 그 출판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만들어진 출판물을 배포할 수 없다.

1. 출판권 설정행위에 특약이 있는 경우
2. 출판권의 존속기간 중 복제권자에게 그 저작물의 출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고 그 대가에 상응하는 부수의 출판물을 배포하는 경우

제63조 (출판권의 양도·제한 등) ①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제23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28조·제30조 내지 제33조와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출판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저작물의 복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출판권의 등록(출판권설정등록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출판권등록부"로 본다.

제3장 저작인접권

제1절 통칙

제64조 (보호받는 실연·음반·방송)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연·음반 및 방송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다.

1. 실연

가.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행하는 실연

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다. 제2호 각 목의 음반에 고정된 실연

라. 제3호 각 목의 방송에 의하여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한다)

2. 음반

가.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결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라.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결국의 국민(당해 체결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당해 체결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법인을 포함한다)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3. 방송

가.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나.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다.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방송으로서 계약국의 국민인 방송사업자가 당해 계약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는 방송

제65조 (저작권과의 관계) 이 장 각 조의 규정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실연자의 권리

제66조 (성명표시권) ①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8조 (실연자의 인격권의 일신전속성) 제66조 및 제67조에 규정된 권리 (이하 "실연자의 인격권"이라 한다)는 실연자 일신에 전속한다.

제69조 (복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0조 (배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 (대여권) 실연자는 제70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2조 (공연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방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75조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방송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단체 또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보상권리자를 위하여 청구할 수 있는 보상금의 금액은 매년 그 단체와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76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7조 (공동실연자)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합창·합주 또는 연극등을 실연하는 경우에 이 절에 규정된 실연자의 권리(실연자의 인격권은 제외한다)는 공동으로 실연하는 자가 선출하는 대표자가 이를 행사한다. 다만, 대표자의 선출이 없는 경우에는 지휘자 또는 연출자 등이 이를 행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연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독창 또는 독주가 함께 실연된 때에는 독창자 또는 독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5조의 규정은 공동실연자의 인격권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절 음반제작자의 권리

제78조 (복제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79조 (배포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음반의 복제물이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 (대여권) 음반제작자는 제79조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81조 (전송권) 음반제작자는 그의 음반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82조 (방송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방송사업자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5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디지털음성 송신사업자가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25조제5항 내지 제9항 및 제76조제3항·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3조의2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상) ①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음반제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음반제작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절 방송사업자의 권리

제84조 (복제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

제85조 (동시중계방송권) 방송사업자는 그의 방송을 동시중계방송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제86조 (보호기간) ① 저작인접권(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발생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② 저작인접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한다.

1. 실연의 경우에는 그 실연을 한 때
2. 음반의 경우에는 그 음반을 발행한 때. 다만,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이 경과한 때까지 음반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음을 음반에 맨 처음 고정한 때
3. 방송의 경우에는 그 방송을 한 때

제6절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 등

제87조 (저작인접권의 제한) ①제23조·제24조·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 내지 제32조·제33조제2항·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목적이 된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는 제76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에 따라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자체의 수단으로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제물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8조 (저작인접권의 양도·행사 등)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또는 방송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89조 (실연·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 (저작인접권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저작인접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

부"는 "저작인접권등록부"로 본다.

제4장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보호

제91조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

1. 대한민국 국민
2.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제92조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 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제93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본다.

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제94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① 제23조·제28조 내지 제34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제95조 (보호기간) 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

제96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행사 등) 제20조 단서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거래제공에, 제45조제1항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양도에, 제46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허락에, 제47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에, 제48조의 규정은 공동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행사에, 제49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소멸에 관하여 각각 준용한다.

제97조 (데이터베이스 이용의 법정허락) 제50조 및 제51조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8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제5장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제99조 (저작물의 영상화) ① 저작재산권자가 저작물의 영상화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포함하여 허락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영상저작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저작물을 각색하는 것
 2. 공개상영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공개상영하는 것
 3. 방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방송하는 것
 4. 전송을 목적으로 한 영상저작물을 전송하는 것
 5. 영상저작물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복제·배포하는 것
 6. 영상저작물의 번역물을 그 영상저작물과 같은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
- ② 저작재산권자는 그 저작물의 영상화를 허락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허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그 저작물을 다른 영상저작물로 영상화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제100조 (영상저작물에 대한 권리) ①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②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사용되는 소설·각본·미술저작물 또는 음악저작물 등의 저작재산권은 제1항의 규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실연자의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복제권,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배포권,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송권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전송권은 특약이 없는 한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제101조 (영상제작자의 권리) ① 영상제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공개상영·방송·전송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실연자로부터 영상제작자가 양도 받는 권리는 그 영상저작물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로 하며, 이를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5장의2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101조의2 (보호의 대상)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문자·기호 및 그 체계
2. 규약: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
3. 해법: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방법

제101조의3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종류·용도, 프로그램에서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및 복제의 부수 등에 비추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에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인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하는 경우
 5.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시험이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목적(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할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에 한한다)
-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려는 자는 문화체

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1조의4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는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그 밖에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제101조의5 (정당한 이용자에 의한 보존을 위한 복제 등) ①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소지·이용하는 자는 그 복제물의 멸실·훼손 또는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복제물을 복제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하는 자는 해당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복제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소지·이용할 권리가 해당 복제물이 멸실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의6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복제하여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배타적 권리(이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설정을 받은 자(이하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로 인한 범위에서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프로그램의 복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질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프로그램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④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는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을 양도할 수 없다.

⑤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설정행위를 한 날부터 3년간 존속한다.

⑥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제54조,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제101조의7 (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자와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저작물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장 저작권위탁관리업

제105조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업무규정을 작성하여 이를 저작권신탁관리허가신청서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저작물등에 관한 권리자로 구성된 단체일 것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
3. 사용료의 징수 및 분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신탁관리업 또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대한민국 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이하 "저작권위탁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에 관하여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 및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한다. 다만,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승인의 경우에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거나 신청된 내용을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및 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보호 또는 저작물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누구든지 적어도 영업시간 내에는 목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

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7조 (서류열람의 청구)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신탁관리하는 저작물등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저작물등의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8조 (감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에게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자의 권익보호와 저작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09조 (허가의 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2. 제10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4.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

제110조 (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1조 (과징금 처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제 10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주체가 건전한 저작물 이용 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12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① 저작권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이 장에서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하 "분쟁"이라 한다)을 알선·조정하며, 저작권의 보호 및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로 본다.

④ 위원회가 아닌 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12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보유자와 그 이용자의 이해를 반영하는 위

원의 수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분야별 권리자 단체 또는 이용자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2.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는 자 및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분야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4.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그 밖에 저작권 또는 문화산업 관련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3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분쟁의 알선·조정
2. 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의 요율 또는 금액에 관한 사항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공동으로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3. 저작물등의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도모를 위한 사업
4.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5. 저작권 연구·교육 및 홍보
6. 저작권 정책의 수립 지원
7. 기술적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정책 수립 지원
8. 저작권 정보 제공을 위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9.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

10.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시정권고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시정명령 요청
11.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1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113조의2 (알선) ① 분쟁에 관한 알선을 받으려는 자는 알선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알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알선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알선위원을 지명하여 알선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알선위원은 알선으로는 분쟁해결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알선을 중단할 수 있다.

④ 알선 중인 분쟁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조정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알선은 중단된 것으로 본다.

⑤ 알선이 성립한 때에 알선위원은 알선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⑥ 알선의 신청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조정부) ① 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1인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의2 (조정의 신청 등) ①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은 제114조에 따른 조정부가 행한다.

제115조 (비공개) 조정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정부장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6조 (진술의 원용 제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한 진술은 소송 또는 중재절차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제117조 (조정 성립) ①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 함으로써 성립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8조 (조정비용 등) ① 조정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로서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 조정의 신청 및 절차, 조정비용의 납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조정비용의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19조 (감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재판 또는 수사를 위하여 저작권의 침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받은 경우

2. 제114조의2에 따른 분쟁조정을 위하여 분쟁조정 양 당사자로부터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등에 관한 감정을 요청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감정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120조 (저작권정보센터) ① 제113조제7호 및 제8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저작권정보센터를 둔다.

② 저작권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1조 삭제

제122조 (경비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제113조제3호·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금전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금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①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제25조·제31조·제75조·제76조·제76조의2·제82조·제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청자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 ②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 ③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 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④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6조 (손해액의 인정) 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 결과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127조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 또는 실연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28조 (저작자의 사망 후 인격적 이익의 보호)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족(사망한 저작자의 배우자·자·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제127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29조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공동저작물의 각 저작자 또는 각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저작자 또는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123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저작재산권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13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위원회 또는 저작권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1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2조 (수수료)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신청 등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법정허락 승인(제89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자
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제63조제3항·제90조·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등록 사항의 변경·등록부 열람 및 사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3. 제10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자

제133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한다)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정보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폐기 또는 삭제하게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 또는 삭제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삭제 <2009.4.22>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다른 법률의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33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등의 삭제명령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는 프로그램 또는 정보(이하 "불법복제물등"이라 한다)가 전송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이메일 전용계정은 제외한다)]를 말하며,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다른 계정을 포함한다]을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계정을 정지하기 7일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정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복제·전송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에 개설된 게시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9호의 게시판 중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 편의를 제공하는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으로서 해당 게시판의 형태, 게시되는 복제물의 양이나 성격 등에 비추어 해당 게시판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게시판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를 정지하기 10일 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게시판의 서비스가 정지된다는 사실을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제2항에 따른 명령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복제·전송자 및 제4항에 따른 게시판의 운영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3조의3 (시정권고 등) ①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불법복제물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불법복제물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2.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3.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등을 전송한 복제·전송자의 계정 정지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제1항제3호의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

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13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34조 (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사업)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이 소멸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2009.4.22>

제135조 (저작권재산권 등의 기증) ① 저작재산권자등은 자신의 권리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기증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재산권자등으로부터 기증된 저작물등의 권리를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당해저작재산권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저작물등을 이용할 수 없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증 절차와 단체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장 벌칙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7. 제55조의2(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제138조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을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복제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139조 (몰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로서 그 침해자·인쇄자·배포자 또는 공연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를 몰수한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5호 및 제6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못한다)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2조 (과태료) ① 제10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2조제4항을 위반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

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게시,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 삭제 <2009.4.22>

⑤ 삭제 <2009.4.22>

부칙 (생략)

연구보고 RR 2009-4

교육현장에서의 저작물 인용기준에
관한 연구

발 행 2009년 9월 일
발행인 과 덕 훈
발행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주 소 ㉠100-400 서울 중구 퇴계로 299
전화: (02)2118-1114
팩스: (02)2265-6872
등 록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인쇄처 신성인쇄상사
전화: (02)2272-0345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 에듀넷 : www.edunet.net

* 리 스 : www.riss4u.net